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7 2018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5.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8. 6. 11.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백종대)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52억원을 포함한 9조 9.216억원임
- O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9조 9,511억원
-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7%인 8조 9,990억원
- 세계잉여금은 9,521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36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152억원임

나. 세입결산

- O 2017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9조 9,511억원으로
- O 세입징수결정액 9조 9,662억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3%임
- O 불납결손액은 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46억원임
- O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6,457억원과 국고보조금 235억원 및 특별회계전입금 5,914억원으로 총 5조 2,606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2.9%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3조 4,962억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604억원으로 총 3조 6.56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의 36.8%임
 - 자체수입은 1,810억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1.8%임
 - 기타, 이월금 등은 8,527억원임

다. 세출결산

O 2017년도 총 세출액은 8조 9.990억원으로

- 예산현액(9조 9,215억원) 대비 90.7%이며,
 4,369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4,857억원임
-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8조 4.525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45억원.
 - 교육일반 부문에 5.221억원을 지출하였음
- O 세출성질별 집행내역은
 - 인건비 3조 5,257억원,
 - 물건비 3,442억원,
 - 이전지출 1조 1,100억원,
 - 자산취득 4,530억원,
 - 상환지출 3,525억원,
 - 전출금 3조 2,085억원,
 - 예비비 및 기타 경비 52억원을 지출하였음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O 2017년도 예산 이용액은 245억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등 6건을 이용함
- O 2017년도 예산 전용액은 482억원으로 총 69건을 전용함
- 2017년도 예산 이체 236억원으로 총 17건을 이체함

마. 다음연도 이월액

- O 다음연도 이월은 총 4,369억원으로,명시이월액 1.353원이며, 사고이월액 3.016억원임
- 계속비는 없음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2017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전년도말 대비 4억원 증가한 3,042억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2,396억원이 감소한 1조 3,261억원임

사.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2,209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97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유물품은 33,892건에 878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음

아. 재무제표

○ 2017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4조 8,725억원, 총 부채 2조 1,655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7,070억원임

O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9조 1,391억원, 총 비용 8조 4,267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58억원임

자.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71개 중 63개를 달성하여 달성률 88.7%임 94개 단위과제에 2조 5,044억원을 지출하였음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1. 결산개요

O 2017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조 1,477억 2,5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6,269억원 8,500만원과

간주처리분 1,554억 6,900만원을 더한

총 예산액은 9조 5,963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한 규모임

O 2017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9조 5,963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3,252억 4,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조 9,215억 8,400만원이며

전년대비 12.1% 증가한 규모임

- O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8.5%, 7,753억 1,600만원 증가한 9조 9,511억 2,000만원임
- O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7.8%, 6,539억 3,000만원 증가한 8조 9,990억 4,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1,213억 8,600만원이 증가한 9,520억 7,500만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51억 8,800만원이 발생되었음

2.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재원별 구분에 따라 이전수입¹⁾, 자체수입²⁾.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조 9,511억 2,000만원으로 예산 현액(9조 9,215억 8,400만원) 보다 295억 3,6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9조 1,758억 400만원) 보다 8.5%, 7.753억 1.6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1〉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B)	수 수납액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 ⁽ 정액 (결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수납액		백 대비 ·액	징수결정 수납] 대비
연노	(A)	(B)	` (C) '	(C-A)	(C/A)	(C−B) ^{₹1}	(C/B)		
2017	9,921,584	9,966,167	9,951,120	29,536	100.3	△15,047	99.85		
2016	8,850,089	9,191,221	9,175,804	325,715	103.7	△15,417	99.83		
증감액	1,071,495	774,946	775,316						
증감률	12.1	8.4	8.5						

주1. 미수납액(146억 4,600만원)과 불납결손액(4억 100만원)의 합

¹⁾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²⁾ 자체수입: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선택적교육수입(평생학습 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보증금회수,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등

○ 실제 수납액은 9조 9,511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9조 9,661억 6,700만원) 보다 △146억 4,600만원이 미수납된 것임

〈표 3-2〉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_

	지스겨져애	수납액	(B)	미수납액		
회계연도	정수결정액 (A)		수납률 (B/A)		전년대비 증감액	
2017	9,966,167	9,951,120	99.85	14,646	△480	
2016	9,191,221	9,175,804	99.83	15,126	△2,766	
2015	8,486,982	8,468,772	99.79	17,892	_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이전수입 89.8%, 이월금 8.4%, 자체수입 1.8%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표 3-3〉 재원별 세입결산

		세사취해	지스겨저애	결산(수납)	액(C)	예산현액대비	
-	구 분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B)			구성비	증 감 (C-A)	수납률 (C/A)
,	합 계	9,921,584	9,966,167	9,951,120	100.0	29,536	100.3
	이 전 수 입	8,928,734	8,939,435	8,939,435	89.8	10,701	100.1
	이 월 금	830,689	830,689	830,689	8.4	0	100.0
	자 체 수 입	162,161	196,043	180,996	1.8	18,835	111.6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의존재원으로서 중앙정부이전수입³⁾,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⁴⁾, 기타이전수입⁵⁾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임
- 2017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9.8%, 8조 9,394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8조 9,287억 3,400만원)
 보다 107억 100만원 초과 수납된 바.
 - 초과 수납의 주된 요인은 지방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이전수입이 106억 8.500만원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임

〈표 3-4〉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결산(수납	·)액(C)	예산현액대비		
구 분	(A)	(B)		구성비 ^{주1}	증 감 (C-A)	수납률 (C/A)	
이 전 수 입	8,928,734	8,939,435	8,939,435	89.8	10,701	100.1	
중앙정부이전수입	5,265,899	5,260,640	5,260,640	52.9	△5,259	99.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45,958	3,656,643	3,656,643	36.8	10,685	100.3	
기타이전수입	16,877	22,152	22,152	0.2	5,275	131.3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³⁾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⁵⁾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6)과 국고보조금7) 및 특별회계전입금8)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9)과 특별교부금10)으 로 구부됨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조 2,606억 4,0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5조 2,658억 9,900만원) 보다 △52억 5,9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11)

〈표 3-5〉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Γ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결산(수납)액(C)	예산현의	백대비		
				문		(A)	(B)		구성비 ^{주1}	증 감 (C-A)	수납률 (C/A)
	3	중앙정] 부 o	전수	입	5,265,899	5,260,640	5,260,640	52.9	△5,259	99.9
		지방	교육자	정교부	금	4,645,787	4,645,693	4,645,693	46.7	△94	100.0
		보	통 3	고 부	금	4,441,402	4,441,402	4,441,402	44.6	0	100.0
		특	별 3	고 부	금	204,385	204,291	204,291	2.1	△94	100.0
		국 :	고 5	년 조	금	28,620	23,455	23,455	0.2	△5,165	82.0
		특별	. 회 계	전입	금	591,492	591,492	591,492	5.9	0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⁶⁾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그 所屬機關을 포함)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 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⁷⁾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⁸⁾ 특별회계전입금: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 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⁹⁾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

¹⁰⁾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수요 (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로 구분

¹¹⁾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1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2017년 2월 교육부의 확정 교부¹²⁾(4조 2,670억 8,700만원) 및 정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한 추가 교부¹³⁾(1,743억 1,500만원)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4조 4,414억 200만원) 전액이 전입된 것으로 제출됨¹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9,400만원 감수납된 바, 특별교부금 집행 정산으로 발생한 감교부 △58억 9,000만원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교부금 57억 9,600만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¹⁵⁾
-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51억 6,5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교육급여사업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감수납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 교육급여(국고보조금)사업비가 196억 2,5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 201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 11월 중 144억 6,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이 어려워 △51억 6,500만원이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으로 남게 된 것임

〈표 3-6〉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미수납액	
가내시액 (내시일)	세입예산액 (확정일)	변경내시액 (내시일)			세입예산액 (가내시액) 대비	징수결정액 (최종내시액) 대비
19,625	19,625	14,460	14,460	14,460	$\triangle 5,165$	0
(2016.9.22.)	(2016.12.21.)	(2017.11.16.)	14,400	14,400	△5,165	U

^{12)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314, 2017.02.28.)

¹³⁾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066, 2017.07.22.)

¹⁴⁾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160(2018.04.13.)

¹⁵⁾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14.)

- 교육급여(국고보조금)사업비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동일사유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교육급여보조금 예산 편성시 신규수급자를 위한 여유인원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내시액을 전액 편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¹⁶)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원포인트 감추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지원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예산으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정부의 유 아교육지원특별회계¹⁷⁾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2017년 1월 교육부 배정액¹⁸⁾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5,914억 9,200만원) 전액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됨

^{16)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p.59

^{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 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3년(2017년~2019년) 한시의 특별회계

^{18) 2017}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30, 2017.01.13.)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 및 제9항¹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3조 6,566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3조 6,459억 5,800만원) 보다 0.3%,
 106억 8,5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임

〈표 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건기 : 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결산(수납)액(C)	예산현의	박대비
구 분	예산연역 (A)	る下型の当 (B)		구성비 ^{주1}	증 감 (C-A)	수납률 (C/A)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45,958	3,656,643	3,656,643	36.8	10,685	100.3
법 정 이 전 수 입	3,485,506	3,496,222	3,496,222	35.1	10,716	100.3
지 방 교 육 세	1,660,840	1,660,841	1,660,841	16.7	1	100.0
담 배 소 비 세	358,097	358,097	358,097	3.6	0	100.0
시 도 세	1,326,787	1,326,787	1,326,787	13.3	0	100.0
학 교 용 지 일반회계부담금	48,182	48,182	48,182	0.5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 전 금	78,516	92,675	92,675	0.9	14,159	118.0
교육급여보조금	13,084	9,640	9,640	0.1	△3,444	73.7
비법정이전수입	160,452	160,421	160,421	1.6	△31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⑨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 법정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보다 107억 1,600만원 초과수납된 것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²⁰⁾이 당초보다 141억 5,900만원 초과 전입되었고 ② 교육급여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보다 △34억 4,4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 국비(국고보조금)와 지방비(교육급여보조금)의 부담비율²¹⁾에 따라 국비(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연동하여 지방비 (교육급여보조금)도 변경 내시된 것임에도 변경내시액(96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

〈표 3-8〉교육급여보조금(지방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가내시액 (내시일)	세입예산액 (확정일)	변경내시액 징 수 (내시일) 결정약		수납액	미수 세입예산액 (가내시액) 대비	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13,084	13,084	9,640			네비	
(2016.9.22.)	(2016.12.21.)	(2017.11.16.)	9,640	9,640	$\triangle 3,444$	0

○ 아울러, 서울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교육청에 4,012억 5,400만원²²⁾을 추가로 전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²³⁾에 따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서울시 결산결과 법정전출금 대상액(A)	수납액 (B)	미전입액 (B-A)	
합계	3,746,979	3,345,725	△401,254	
지방교육세	1,849,937	1,660,841	△189,096	
담배소비세	358,313	358,097	△216	
시 도 세	1,538,729	1,326,787	△211,942	

^{23)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²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안분액을 교육청에 납입

²¹⁾ 국비(국고보조금) : 지방비(교육급여보조금) = 6 : 4

²²⁾ 법정이전수입 미전입 내역

다. 자체수입

(1) 자체수입 세입 관련

- **자체수입**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업료 및 입학금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시·도교육청이 공공 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임²⁴)
- 2017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은 1,809억 9,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1.8%를 차치하며, 예산현액(1,621억 6,100만원) 보다 11.6%, 188억 3,500만원 증가된 것이나, 징수결정액(1,960억 4,300만원) 대비 △7.7%, △150억 4,7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9〉 자체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	납 액(C 수납률 (C/B)	.) 구생비 ^견	불납	미수납액 (B-C-D)
자:	체수입 계	162,161	196,043	180,996	92.3	1.8	401	14,646
교수-학습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20,275	122,067	120,848	99.0	1.2	300	919
활동수입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367	1,945	1,945	100.0	0.0	0	0
행정활동 수 입	시용료 및 수수료	5,176	5,482	5,464	99.7	0.1	0	18
기시스이	자산임대수입	430	444	407	91.7	0.0	0	37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13,307	14,438	14,390	99.7	0.1	0	48
이자수입	이자수입	4,066	3,647	3,647	100.0	0.0	0	0
	보증금회수	0	415	415	100.0	0.0	0	0
기케스이	제재금수입	572	2,170	1,117	51.5	0.0	25	1,028
자체수입	기타수입	14,595	32,140	32,122	99.9	0.3	0	18
	과년도수입	1,373	13,295	641	4.8	0.0	76	12,578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²⁴⁾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재정용어 검색 결과

〈표 3-10〉 자체수입 수납액 비교

			2017			2016	<u> </u>	객만원, %)
	회계연도		수 수납액(B) 전액 (A) 비율① (B/A)		징 수 결정액 (C)	수납액	(D) 비율② (D/C)	증 감 수납액 (B-D)
,	자체수입 계	196,043	180,996	92.3	195,915	180,498	92.1	498
교수- 학습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22,067	120,848	99.0	130,336	128,728	98.8	△7,880
교수수 학동이 할수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945	1,945	100.0	2,105	2,105	100.0	△160
행정활 동수입	시용료 및 수수료	5,482	5,464	99.7	5,946	5,922	99.6	△458
자산	자산임대수입	444	407	91.7	456	403	88.4	4
수입	자산매각대	14,438	14,390	99.7	8,943	8,943	100.0	5,447
이자 수입	이자수입	3,647	3,647	100.0	9,094	9,094	100.0	△5,447
	보증금회수	415	415	100.0	2	2	100.0	413
자체	제재금수입	2,170	1,117	51.5	2,096	1,535	73.2	△418
수입	기타수입	32,140	32,122	99.9	22,783	22,537	98.9	9,585
	과년도수입	13,295	641	4.8	14,152	1,229	8.7	△588

- 자체수입의 66.8%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결정액 (1,220억 6,700만원)의 99.0%인 1,208억 4,800만원이 수납된 것임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2조²⁵⁾에 의하여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규칙²⁶⁾으로 정하는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이 물가안정 및

^{25)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동결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하여 매년 감소되고 있음

〈표 3-11〉 입학금 및 수업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회계연도		2017	2016	2015	$2014^{ ilde{ riangle}1}$	2013
입학금 및 수업료	금액	120,848	128,728	131,251	140,991	154,963
	전년대비 증감률	△6.1	△1.9	△6.9	△9.0	_
학생수 ^{주2}	인원	114,008	120,836	124,160	128,375	133,142
478T	전년대비 증감률	△5.7	△2.7	△3.3	△3.6	_

주1. 누리과정지원 유아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실시

주2. 서울교육통계(매년 4.1.) 기준으로 공립 유치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수

- 자체수입의 17.8%를 차지하는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목적 사업비 반납금 등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321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직전회계연도(225억 3,700만원) 보다 95억 8,500만원이 증가된 바, 주요 증가사유는 전년도 목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²⁷⁾
- 자체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이자수입은 직전회계연도(90억 9,400만원) 보다 △59.9%, △54억 4,700만원이 감소한 36억 4,700만원인 바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L \\ \\ \\ \\ \\ \\ \\ \\ \\ \\ \\ \\ \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주1}	입학금	비고
유치원(공립)	년액	396,000	5,200	
고등학교(공·사립)	년액	1,450,800	14,100	
방송통신고등학교	년액	135,000	5,300	

주1. 수업료의 반기·분기·월액의 표기 생략

27)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14.)

^{26)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조기정산 등으로 자금의 여유가 발생하여 2016회계연도 중 가입하여 2017회계 연도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²⁸)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²⁹)함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는 동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직전회계연도 보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2〉이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	급	정기	예금	기타예금		
회계연도	일평균 잔액	총예금 이자 (B=C+D)	일평균 잔액	정기예금 이자 (C)	일평균 잔액	기타예금 이자 (D)	
2017	782,916	3,647	536,561	1,221	246,355	2,426	
2017		(100.0)		(33.5)		(66.5)	
2016	668,865	9,094	435,677	5,794	233,188	3,300	
2010		(100.0)		(63.7)		(36.3)	
2015	271,400	3,948	49,288	777	222,112	3,171	
2013		(100.0)		(19.7)		(80.3)	

※ ()는 총예금이자에 대한 비율임

○ 자체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자산매각대**는 직전회계연도(89억 4,300만원) 보다 60.9% 증가한 143억 9,000만원으로 가칭 노이초 부지 유상이관³⁰) 및 은로초-흑석8구역 토지교환 차액금³¹) 징수 등에 따라 증가된 것임

^{28) 2016}년도 가입한 미해지 정기예금은 4,470억원으로 2017.12.31. 해지시 이자수입 예상액 80억원임

^{29) 2013~2016}년도 금고약정 : 만기경과후 이자율을 해지 시까지 가입금리와 동일하게 적용 2017~2020년도 금고약정 : 만기경과후 이자율을 해지 시까지 기간별 차등하여 적용

^{** 2016}년도에 가입한 정기예금의 경우 2013~2016년도 금고약정에 따라 만기경과 후 해지 시까지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되며 2016년도 정기예금이자율(1.65%~2.20%)이 2017년도 정기예금 이자율 (1.14%~1.20%)보다 높음

³⁰⁾ 가칭 노이초 부지 유상이관 납무 대금(1차) : 71억 3,600만원

³¹⁾ 은로초-흑석8구역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차액금 : 18억 6,200만원

- 자체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사용료및수수료**는 직전회계연도 (59억 2,200만원) 보다 △7.7%, △4억 5,800만원이 감소한 54억 6,400만원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인정도서 심의수수료 수입 감소인 것으로 확인됨³²⁾
- 2017회계연도 자체수입 규모 및 수납률은 직전회계연도와 유사하나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일시적인 수입인 **자산매각대·기타수입**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및수업료)은 감소한 바, 향후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에 따라자체수입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33)

〈표 3-13〉 주요 자체수입 구성비율 현황

회계연도 회계연도	2017 수납	랍액(A)	2016 수남	す액(B)	증감(A-B)	
외계한도		비율		비율		비율
자체수입 계	180,996	100.0	180,498	100.0	498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20,848	66.8	128,728	71.3	△7,880	△4.6
자산매각대	14,390	8.0	8,943	5.0	5,447	3.0
이 자 수 입	3,647	2.0	9,094	5.0	$\triangle 5,447$	△3.0
기타수입	32,122	17.8	22,537	12.5	9,585	5.3

³²⁾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14.)

³³⁾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예정 시기 및 범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 p.82

o (고교 무상교육)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2) 자체수입 미수납액 관련

O 2017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146억 4,6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1,960억 4,300만원) 대비 미수납률은 7.5%로 검토됨

〈표 3-14〉 자체수입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징수결정액	수납	액	불납결약	손액	미수납	날 액
회계연도	(A)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금액 (D =A-B- C)	비율 (D/A)
2017	196,043	180,996	92.3	401	0.20	14,646	7.5
2016	195,915	180,498	92.1	291	0.15	15,126	7.7
전년대비 증 감	128	498	0.2	110	0.05	△480	△0.2

○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검토하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80억 1,300만원(5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중' 41억 6,700만원(28.4%), '납부자태만' 14억 100만원 (9.6%) 순으로 검토됨

〈표 3-15〉 자체수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회계연도	미수납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타				
2017	14,646 (100.0)	391 (2.7)	123 (0.8)	8,013 (54.7)	1,401 (9.6)	4,167 (28.4)	551 (3.8)				
2016	15,126 (100.0)	48 (0.3)	238 (1.6)	8,247 (54.5)	810 (5.4)	2,236 (14.8)	3,548 (23.4)				
전년도 대비증감	△480	343	△115	△234	591	1,931	△2,997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4억 8,000만원 감소 되고 재산압류 중인 미수납액도 증가한 바, 서울시교육청이 미수 납액 관리를 위해 미납자의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나
- 채무자징수유예 및 납부자 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증가한 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 및 장기 미수 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수업료 미납의 경우, 강제적 징수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고, 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시효소멸 조기 적용 등보다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6〉 자체수입 미수납액 세부내역

								1 入 1 1		(난위 : 맥만원, %)
3	구 분	<u>1</u>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급액 (D A B C)	수납 미수 납률 (D/A)	구성 비율	미수납 내역
(ズ	업 난연 업 5	토	120,210	122,007	120,788	300	919	0.8	6.3	0 수업료 : 544 -유치원 : 1 -고등학교 : 543 0 지난년도 수업료 : 375 -고등학교 : 375
사 수	용	료 입	4,606	4,852	4,834	0	18	0.4	0.1	0 토지사용료 : 18
임대	개료<	수입	430	444	407	0	37	8.3	0.3	0 대부료 : 37
토	기마	각	13,299	14,379	14,331	0	48	0.3	0.3	0 공유재산 매각대금 : 48
변	상	금	267	658	262	0	396	60.9	2.7	0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396
위	약	금	21	291	197	0	94	32.3	0.6	0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 92 0 지연배상금 : 2
연	체	료	172	318	195	24	99	31.1	0.7	0 변상금연체료 : 61 0 토지사용료연체료 : 7 0 과태료연체료 : 31
과	태	豆	112	523	423	1	99	18.9	0.7	0 과태료 : 94 0 공무원과태료부과처분: 5
기제수	재	타금입	0	380	40	0	340	89.5	2.3	0 공무원 징계부가금 : 340
ユ	외수	- 이	14,595	32,140	32,122	0	18	0.1	0.1	0 소송비용액 : 9 0 대부료 및 변상금분납 이자 등 : 9
과	선도수	스립	1,373	13,295	641	76	12,578	94.6	85.9	0 토지매각대금 : 9 0 토지매각분할이자 : 14 0 대지료 : 184 0 변상금 : 6,381 0 위약금 : 2,261 0 변상금분납이자 : 127 0 부당이득금 : 2,522 0 과태료 : 468 0 소송비용액 등 : 612

[※] 구성비율은 자체수입 미수납액(146억 4,600만원)에 대한 비율이고, 각 항목의 합계는 146억 4,600만원임

라. 지방교육채

O 2017회계연도에는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금 (1,743억 1,500만원) 및 법정전출금(5,885억 2,1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2017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을 취소³⁴⁾하여 지난 2013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았음

〈표 3-17〉 지방교육채 발행(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17	2016	2015	2014	2013
발 행 액	0	421,065	815,070	242,143	131,082

마. 전년도이월금

○ 2017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액은 8,306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9조 9,511억 2,000만원)의 8.4%를 차지하며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54억 4,200만원과 명시·사고이월액 3,252억 4,700만원을 수납한 것임

〈표 3-18〉전년도이월금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 분	예간연혁 (A)	グナセグギ (B)		구성비 ^{주1}	증 감 (C-A)	수납률 (C/A)
전 년 도 이 월 금	830,689	830,689	830,689	8.4	0	100.0
순세계잉여금	505,442	505,442	505,442	5.1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325,247	325,247	325,247	3.3	0	100.0
명 시 이 월	107,437	107,437	107,437	1.1	0	100.0
사 고 이 월	217,810	217,810	217,810	2.2	0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34) 2017}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변경 현황

^{- 2,705}억 1,600만원(본예산) → 1,334억 4,000만원(1회 추경) → 0원(2회 추경)

3. 세출결산

가. 세출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최종예산은 9조 5,963억 3,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252억 4,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조 9,215억 8,4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8조 8,500억 8,900만원) 대비 12.1%. 1조 714억 9.500만원 증가된 것임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8조 9,990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8조 3,451억 1,500만원, 94.3%) 대비 집행률은 △3.6%p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68억 8,700만원(4.4%)이고, 불용액의 경우 4,856억 5,300만원(4.9%)발생되었음

〈표 3-19〉세출예산 결산 총괄

회계	à	에 산 현 역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연도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A)	(B)	비율 (B/A)	(C)	비율 (C/A)	(D - A-B-C)	비율 (D/A)
2017	9,596,337	325,247	9,921,584	8,999,044	90.7	436,887	4.4	485,653	4.9
2016	8,628,272	221,817	8,850,089	8,345,115	94.3	325,247	3.7	179,727	2.0
증감액	968,065	103,430	1,071,495	653,930	△3.6	111,640	0.7	305,925	2.9
증감률	11.2	46.6	12.1	7.8		34.3		170.2	

○ 부분·정책사업별로 세출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총 지출액(8조 9,990억 4,400만원)의 93.9%, 8조 4,524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245억 600만원(0.3%) 지출되었으며, 교육일반은 5,220억 5,100만원(5.8%)이 지출되었음

〈표 3-20〉 부분·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예산혂액	ス	출액		이월	액	불용역	백				
		구		분	-		(A)	(B)	비율 (B/A)	구성비	(C)	비율 (C/A)	(D=A-B-C)	비율 (D/A)
ថ្មី	}					계	9,921,584	8,999,044	90.7	100.0	436,887	4.4	485,653	4.9
유	누아	및	초 ・	중	등교	육	9,051,553	8,452,487	93.4	93.9	433,198	4.8	165,868	1.8
	인	적	자	원	순	용	4,323,103	4,282,092	99.1	47.6	188	0.0	40,823	0.9
	교-	テーマ	학습	활	동지	원	491,745	472,356	96.1	5.2	7,339	1.5	12,050	2.5
	교	육	복	지	지	원	1,335,891	1,299,540	97.3	14.4	82	0.0	36,269	2.7
	보?	건/급	'식/	/체-	육활	동	129,961	78,493	60.4	0.9	47,540	36.6	3,928	3.0
	학.	교재	정	지 위	원관	리	1,811,297	1,795,759	99.1	20.0	0	0.0	15,538	0.9
	학	1112£	देवें	건가	선시	설	959,556	524,247	54.6	5.8	378,049	39.4	57,260	6.0
ΣĘ	· 실	.	직	업	교	육	25,800	24,506	95.0	0.3	525	2.0	769	3.0
	평	٦.	y	11/	<u>!</u>	육	25,127	23,908	95.2	0.3	504	2.0	715	2.8
	직	Ò	1	717	<u>!</u>	육	673	598	88.9	0.0	21	3.1	54	8.0
'n	1	육		일		반	844,231	522,051	61.8	5.8	3,164	0.4	319,016	37.8
	교	육	행	정	일	반	104,318	95,019	91.1	1.1	2,622	2.5	6,677	6.4
	기	관	순	영	관	리	52,117	49,081	94.2	0.5	542	1.0	2,494	4.8
	기	방채/	상혼	및	리스	료	683,688	377,936	55.3	4.2	0	0.0	305,752	44.7
	예	비 비]	및	7]	타	4,108	15	0.4	0.0	0	0.0	4,093	99.6

- O 주요 정책사업의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 증감현황을 검토하면
 -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사업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13.5%, 2,009억 4,100만원이 증가된 바, 2013~2015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액³⁵⁾ 2,395억 5,600만원, BTL원금 상환액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³⁶⁾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37.4%, 258억 4,100만원이 증가된 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³⁷⁾ 119억 6,100만원, 선거관리 31억 8,000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33억 1,9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34.6%, 3,341억 6,900만원이 증가되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직전 회계 연도 대비 △76.7%, △2,586억 8,400만원 감소된 바, 주 요인은 교육부 지침변경에 의한 무상급식비(3,679억원)의 정책사업간 이동38)(보건/급식/체육활동→교육복지지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직업교육 사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71.0%, △14억 6,700만원이 감소한 바, 위탁교육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35) 2013}년 학교신설 지방채상환 87,388백만원, 2014년 공자기금인수 지방채상환 76,420백만원, 2015년 교부금차액보전(누리과정) 75,748백만원 상환

³⁶⁾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160(2018.04.13.),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14.)

³⁷⁾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처분대금 등을 적립하여 건립기금을 마련하고자 2016. 7. 7.자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됨

^{38)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715, 2016.09.07.)

주요 달라진 점<신설>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급식비는 '급식지원' 단위사업에 편성하고 급식지원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등 제반경비는 '급식관리' 단위사업에 편성

^{- [}변경전] (정책)보건/급식/체육활동-(단위) 급식관리 → [변경후] (정책) 교육복지지원 -(단위)급식지원

〈표 3-21〉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

7 H	2017		2016		중 김	
구 분	지출액(A)	구성비	지출액(A)	구성비	금액(C=A-B)	비율 (C/B)
세 출 결 산 액	8,999,044	100.0	8,345,115	100.0	653,929	7.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77,936	4.2	176,995	2.1	200,941	113.5
교 육 행 정 일 반	95,019	1.1	69,178	0.8	25,841	37.4
교육복지지원	1,299,540	14.4	965,371	11.6	334,169	34.6
교수-학습활동지원	472,356	5.2	366,242	4.4	106,114	29.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24,247	5.8	448,014	5.4	76,233	17.0
평 생 교 육	23,908	0.3	21,451	0.3	2,457	11.5
기 관 운 영 관 리	49,081	0.5	44,101	0.5	4,980	11.3
학교재정지원관리	1,795,759	20.0	1,725,749	20.7	70,010	4.1
인 적 자 원 운 용	4,282,092	47.6	4,188,772	50.2	93,320	2.2
예비비 및 기타	15	0.0	0	0.0	15	순증
직 업 교 육	598	0.0	2,065	0.0	△1,467	△71.0
보건/급식/체육활동	78,493	0.9	337,177	4.0	△258,684	△76.7

나. 집행잔액(불용액)39) 관련

- O 2017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9조 9,215억 8,400만원)의 4.9%, 4,856억 5,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률 2.0%, 1,797억 2,700만원) 보다 170.2%, 3,059억 2,500만원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발생된 불용액 중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로 불용액이 증가된 주 원인은 전체 불용액의 62.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채 상확 집행잔액⁴⁰⁾ 3.053억 3.700만원으로 확인됨

(표 3-22)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회 계 연 도	2017	2016	2015
예 산 현 액 (A)	9,921,584	8,850,089	8,284,118
불 용 액 (B)	485,652	179,727	134,450
(불용률 B/A)	(4.9)	(2.0)	(1.6)
전년대비 증감	305,925	45,277	17,160
(증 감 률)	(170.2)	(33.7)	(14.6)

40) 2017회계연도 총 불용액 중 지방교육채상환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

총 불용액(A)	지방교육채상환 집행잔액(B)	비율(B/A)
485,652	305,337	62.9

^{39) 2014}년 12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현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기존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을 세분화하는 범주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어 기존 불용액 즉,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잔액'간에 혼란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부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작성지침」에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병용함

- 불용액 발생원인을 검토하면 전체 불용액의 67.0%(3,255억 700만원)는 '계획변경 및 취소' 이고, 전체 불용액의 32.0%(1,551억 9,400만원)는 '예산집행잔액'인 바,
 - 사업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을 포함한 적정 규모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가 우선시된 결과 4,856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표 3-23〉 불용액 발생원인별 현황

			발 생	원 인	
회계연도	회계연도 불용액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 산 집행잔액
2017	485,652 (100.0)	325,507 (67.0)	0 (0.0)	4,951 (1.0)	155,194 (32.0)
2016	179,727 (100.0)	19,797 (11.0)	0 (0.0)	8,193 (4.6)	151,737 (84.4)
2015	134,450 (100.0)	1,178 (0.9)	1 (0.0)	715 (0.5)	132,556 (98.6)

(1)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불용액 발생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교육재정과 소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예산현액 5,789억 1,600만원의 52.7%인 3,053억 3,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전체 불용액(4,856억 5,200만원) 의 62.9%에 해당됨
 - 동 사업비의 경우, 제2회 추경 시 4,245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⁴¹⁾하였으나, 2018년도 세입 재원의 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일부 지방교육채 조기상화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4〉 불용액 100억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세계점제	불	용 액(]	B)	직전 회기			
세부사업	예산현액 (A)		비율 (B/A)	구성비 ^쥐	예산현액 (A)	불용인	i(B) 비율	소관부서
			(D/A)		(11)		門包	
지방교육채 상 환	578,916	305,337	52.7	62.9	76,446	4,284	5.6	교 육 재정과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568,909	35,034	6.2	7.2	398,737	27,395	6.9	교육시설 안 전 과
교원인건비	3,567,553	20,118	0.6	4.1	3,506,297	23,616	0.7	예 산 담당관
학교신증설	242,901	19,662	8.1	4.0	294,966	15,527	5.3	학 교 지원과
교육급여지원	52,846	12,958	24.5	2.7	54,619	7,395	13.5	참여협력 담 당 관
인건비재정 결 함 지 원	1,065,183	10,263	1.0	2.1	1,025,242	1,247	0.1	학 교 지원과

주1. 총 불용액(4,856억 5,200만원) 대한 해당 세부사업 불용액 비율

세부사업	기정액①	제2회 추경②	합계①+②=③	변동율②/①
지방교육채상환	154,393	424,523	578,916	275.0

^{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지방교육채상환 증가분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예산현액 5,689억 900만원의 6.2%인 350억 3,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전체 불용액(4,856억 5,200만원)의 7.2%에 해당되나, 불용률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0.7%p 감소하였음
-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면 총 불용액(350억 3,400만원) 의 93.5%, 327억 7,2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고, 총 불용액 (350억 3,400만원)의 6.4%, 22억 2,8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25〉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불용액 발생원인

국 기		불용 액		발 생 원 인				
회계 연도	예산현액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 산 집행잔액	
2017	568,909	35,034 (100.0)	6.2	2,228 (6.4)	0 (0.0)	33 (0.1)	32,772 (93.5)	
2016	398,737	27,395 (100.0)	6.9	2,899 (10.6)	0 (0.0)	0 (0.0)	24,496 (89.4)	

- ※ ()는 불용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 O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예산현액 전액(100%)이 불용된 주요 사례를 검토하면
 - **주몽학교 장애학생 이동보도 육교설치**(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사업은 학교용지와 공원용지(법인소유임야)에 이동보도육교를 설치 하려 했으나, 공원용지 사용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과

추가설계비(5,000만원)가 필요하여 학교 자체검토 후 사업을 취소 (11월)한 것으로, 사업 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전조사 등을 간과한 채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여 예산을 확보한 결과로 판단됨

- 잠동초 석면텍스전면교체(예산현액 1억 9,800만원) 사업은 제2회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나, 대다수 학부모가 석면철거사업을 반대하고 인근아파트 재건축 허가로 휴교가 예상되어 사업을 취소(11월)한 것으로,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고려는 물론 학생·학부모 의견도 수렴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등한시한 결과로 판단됨
- 상현초 방음벽설치(예산현액 1억 8,000만원)사업은 방음벽 설치 구조 검토 결과 설치가 부적합하고,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 반대, 각종 민원 제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6월)하여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바,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정하였다면 불용액 발생 규모가 축소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됨

〈표 3-26〉계획변경 및 취소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1억원 이상)

소관 부서	사업내역	예산 현액	불	용액	발 생 사 유	비고
부서	<u> </u>	현액		비율	크 76 7기 11	H1-12
성동 광진	자 양 초 본 관 화 장 실 개 선	361	361	100.0	광진구청 예산지원에 따른 교육청 예산 미집행	제2회 추경
강동 송파	주몽학교 장애학생이동 보 도 육 교 설 치	350	350	100.0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 및 추가예산 필요로 사업 취소	본예산
강남 서초	서운중 천장텍스 석 면 제 거	259	259	100.0	학사일정에 의한 공사일정 미확보로 사업 취소	사고 이월
성북 강북	용문중 승강기설치	250	250	100.0	공사현장 여건상 장비진입, 자재입고, 주민 반대민원 등 의 어려움으로 사업 취소	사고 이월

(단위: 백만원, %)

소관	사업내역	예산	불	용액	발 생 사 유	비고
소관 부서	가볍네ㅋ	예산 현액		비율	<u>ਬ</u> ′ਲ ′ਾ ਜਾ	비끄
강동 송파	잠동초 석면텍스 전 면 교 체	198	198	100.0	학부모 사업 반대 및 학교 요청에 따른 계획 취소	제2회 추경
동작 관악	상 현 초 방 음 벽 설 치	180	180	100.0	주민설명회 실시결과 지역 주민반대에 따른 사업 취소	본예산
강남 서초	서일초 석면텍스 전 면 교 체	165	165	100.0	2017년 하계방학 중 석면텍스 교체 사업 완료	제2회 추경
동작 관악	성남중 유도부 숙 소 개 선	150	150	100.0	건축법 강화에 따른 예산부족 및 2020년부터 중학교 기숙 불가에 따른 사업 취소	본예산
중부	성동고 우레탄체육시설교체	129	129	100.0	중구청 예산지원에 따른 교육청 예산 미집행	제2회 추경
남부	성 베 드 로 학 교 장 애 인 편 의 시 설	116	116	100.0	성공회대 기숙사동 증축 후 승강기 위치 재검토로 취소	제1회 추경

○ 지급사유 미발생 사례를 검토하면 **대진고 교사동조명기구개선** (사고이월 9,200만원) 사업은 기 승인된 설계검토 사항을 학교에서 무단 변경하여 시공하고, 2016년 8월 동 공사를 완료한 후 연도말까지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도 않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를 감액⁴²)하여 예산현액(9,200만원)의 37.0%, 3,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7〉 지급사유 미발생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소관 부서	사업내역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	용액 비율	발 생 사 유
북부	대 진 고 교사동조명기구개선	92	58	34	37.0	학교의 무단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감액

⁴²⁾ 근거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인건비는 예산현액 3조 5,675억 5,300만원의
 0.6%인 201억 1,800만원이 불용된 바, 불용률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0.1%p 감소한 것임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은 예산현액 2,429억 100만원의 8.1%,
 196억 6,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동 사업의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9억 6,100 만원(76.1%)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7억원(23.9%)으로 구분됨

〈표 3-28〉학교신·증설 사업 불용액 발생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

		불용 액		불용액 발생원인						
회계연도	예산현액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 산 집행잔액			
2017	242,901	19,662	8.1	14,961	0	0	4,700			
		(100.0)		(76.1)	(0.0)	(0.0)	(23.9)			
2016	294,966	15,527	5.3	13,245	0	0	2,282			
		(100.0)		(85.3)	(0.0)	(0.0)	(14.7)			

※ ()는 불용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 학교신·증설 사업의 주요 불용 사례를 검토하면 가칭)가락일초 신설
 건설비는 2017년 4월에 가락일초 설립이 취소되고, 가락일초·중
 통합학교 신설로 사업이 승인⁴³⁾되어, 예산현액(명시이월, 147억
 4.900만원)의 97.3%, 143억 5.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⁴³⁾ 가칭)가락일초·중 통합학교 신설

⁻ 배경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배치 문제 해소를 위해 동일 부지 내 가락일초, 가락일중을 각각 신설·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함

진행경과: 2016년도 가락일초 신설 예산(153억 6,400만원)으로 사업진행 중이었으나, 가락일중 신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재검토 결정되면서, 2017년 4월 가락일초 설립 이 취소되고 가락일초·중 통합학교 신설로 사업 승인됨

- 천이초 토지매입비 불용사유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천이초 토지 매매금액(58억 200만원)에서 계획지반고44)조성비(10억 6,800 만원)를 공제하고 매각하기로 합의함(2017년 3월)에 따라 예산 현액(58억 200만원)의 18.4%, 10억 6,8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상경초 병설유치원(불용액 2억 5,000만원)과 동일초 병설유치원 건설비(불용액 2억 4,500만원)는 폐쇄 위기에 처한 사립(임대) 유치원⁴⁵⁾의 원아 보호 대책으로 인근 공립유치원의 학급수 증설 (7학급)을 계획하였으나, 사립유치원 운영이 지속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학급수 증설을 축소(7학급→2학급)하여 불용액(4억 9,500만원) 이 발생된 것임

〈표 3-29〉학교신·증설 사업 주요 불용 내역(1억원 이상)

2 =1 H 21	기시대	제기리 I	예산	불용	액	그리기 비계기 ()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현액		비율	구체적 발생사유
강동 송파	가칭)기락일초 신설	건설비	14,749	14,359	97.3	가락일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라 기존 가락일초 예산 불용
남부	천이초	토지 매입비	5,802	1,068	18.4	매도자(서울주택도시공사)측에서 토지 기반 계획과 조정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매매 금액 절감
북부	상경초 병설유	건설비	314	250	79.7	꿈동산유치원 폐쇄 유예에 따른 증설 학급 변경 추진(3학급→1학급)
북부	동일초 병설유	건설비	314	245	78.1	꿈동산유치원 폐쇄 유예에 따른 증설 학급 변경 추진(4학급→1학급)

⁴⁴⁾ 계획지반고(計劃地盤高) : 건물 등 구조물의 토대로 되어 있는 땅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표준 해수면 으로부터의 수직고로 표시됨

⁴⁵⁾ 꿈동산 유치원(현원 248명, 교직원 33명) : 노원구 동일로 227길26

 ²⁰¹⁷년 7월 설립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가 있었으나, 학부모,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담회, 법률개정 건의 노력으로 동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상속인) 후 한시적(2019년 2월)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유치원의 지속 운영을 가능하게하고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부에서 관련 법규 개정 추진중임

(단위: 백만원, %)

) -14 \l	או או או	.11 →1 □	예산	불용	액	7 4 7 1 1 1 1 A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현액		비율	구체적 발생사유	
남부	천왕중 교실증축	건설비	1,999	400	20.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강동 송파	거원초 병설유	건설비	1,097	186	17.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O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급여지원⁴⁶⁾사업은 예산현액 528억 4,600만원의 24.5%, 129억 5,800만원이 불용된 바,
 -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지원대상자 감소분(△46억 1,100만원)
 은 감액 조정하였으나, 교육부에서 11월에 통보한 변경 내시 감소분
 (△86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⁴⁷⁾
 -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교육급여 수급자 인원 추계 방식48) 으로 인하여 연도중 감액 조정과 과다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바, 교육청의 적정 규모 예산 관리를 위해 필요시 원포인트 감추경 방안을 검토하고 동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⁴⁶⁾ 교육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4년 12월)으로 2015. 7. 1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어 교육급여 소관부처는 교육부,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편성함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기 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중위소	·득 40% 이상, 50% 이하	교육청(100%)	국가(60%),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있음	世界後(100%)	시(28%),
40% 미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국가(60%), 시(28%), 구(12%)	구(12%)

⁴⁷⁾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160(2018.04.13.)

⁴⁸⁾ 교육부 교육급여보조금(국비) 예산편성 방식: 당해연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신규수급자를 위한 여유분 10.6%를 추가한 인원수에 전년도 대비 학생수변화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추계하여 교육급여 예산 편성

-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예산현액(1조 651억 8,300만원)중 102억 6,3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 시 인원(17,377명)과 집행인원 (17,256명)의 차이(△121명)가 발생하여 102억 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 인원 변동에 따른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나,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되는 불용액 규모를 고려할 때 소요 예산 산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 발생

○ 지난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3,252억 4,700만원(775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중 7.8%, 254억 9,600 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3-30〉 전년도 이월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च	('16→'17)	기본의	('17→'18)		비율
합 계	325,247	248,065	51,686	25,496	7.8
명시이월	107,437	36,450	51,686	19,301	18.0
사고이월	217,810	211,615		6,195	2.8

- 전년도 이월사업 중 이월액 전액(100%)이 불용된 사업은 4건,5억 8,900만원으로 검토되는 바,
 -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운영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분담금 사업으로 지난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3,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타 시·도교육청이 학교체육지역협의체 구성을 못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7년에도 학교체육지역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소요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임
 - 개포도서관 개축관련 용역은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 내 위치한 개포 도서관 증개축 용역사업비 중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49)로, 2017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가 재검토 통보되어 불용된 것임

⁴⁹⁾ 개포도서관 부지가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증개축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변경)가 반드시 필요함

- 용문중 승강기 설치(예산현액 2억 5,000만원)는 공사추진 장비 진입로 확보 불가 등의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하여 2017년 4월 사업취소로 전액 불용된 것임
- 서운증 천장텍스석면제거(예산현액 2억 5,900만원)는 2016년 제4회 추경(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2017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되었고, 2017년도에도 학사일정에 의한 방학 중 공사기간 확보 불가로 계약취소 후 전액 불용된 것임

〈표 3-31〉 전년도 이월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

(단위: 백만원, %)

이월	사업내역	전년도	지출액	불용	F 액	발 생 사 유	소관
구분	八日네크	이월액	기원기		비율	ਦ <i>'</i> ਰ ′ਾ ਜ	부서
	합 계	589	0	589	100.0		
명시 이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센터운영	30	0	30	100.0	학교체육지역협의체 미구성 으로 불용 및 2018년 본예산 편성	체 육 건 강 과
명시 이월	개포도서관개축 관 련 용 역	50	0	50	100.0	중앙투자심사결과 재심의에 따른 공원조성 변경 심의 일정지연으로 사업 미시행	평 생 교육과
사고 이월	용 문 중 승 강 기 설 치	250	0	250	100.0	공사현장 여건상 장비진입, 자재입고, 주민 반대민원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 취소	성북강북
사고 이월	서운중 천장텍스 석 면 제 거	259	0	259	100.0	학사일정, 공사일정 확보 문제 등으로 학교장요청 에 의해 취소	강남서초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O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시설사업비 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 자양초 본관 화장실 개선50)(예산현액 3억 6,100만원)과 성동고 우레탄체육시설 교체51)(예산현액 1억 2,900만원)사업은 이미 자 치구청으로부터 해당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제2회 추경(9월) 예산에 동 사업비가 편성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등의 사전조사를 소홀히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동일초 급식실 전면개보수(예산현액 2억 8,500만원, 서울시 전입금)는 당초 부분보수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교에서 전 면 보수를 희망하여 배정 예산 전액을 반납하여 불용된 것임
 - 서일초 석면텍스전면교체(예산현액 1억 6,500만원)도 2017년 여름방학 중 석면교체공사 완료하였으나, 교육청 제2회 추경(9월) 예산에 동 사업비가 재차 편성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시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기 사전 조사한 사업장 환경의 변화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남중 유도부 숙소개선(예산현액 1억 5,000만원)은 사업비 부족 으로 숙소개선 추진이 불가능하고. 2020년부터 중학생 운동부

⁵⁰⁾ 자양초 본관 화장실 개선 : 2017년 3월 광진구청에서 3억 5,200만원 화장실개선 사업비 지원 (2018년 4월 공사 완료)

⁵¹⁾ 성동고 우레탄체육시설 교체 : 중구청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 확보하여 2017년 2월 동 사업 완료

기숙 전면 금지에 따라 사업을 취소 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신설 사전조사비(예산현액 1억 5,000만원)는 교육부의 지침변경 (2017년 6월)에 따라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52)되어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예산의 미집행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적극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재원배분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성베드로학교 장애인편의시설(예산현액 1억 1,600만원)은 성공회 대학교 기숙사 준공⁵³⁾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위치가 변경 될 수 있어 2017년 8월 예산이 반납되어 불용된 것임

^{52)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교육부, 2017.06.) p.22

[□] 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등으로 사업목적, 대상 및 사업 내용이 표준화되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⁵³⁾ 성베드로학교 법인에서 추진 중인 성공회대학교 행복기숙사 준공(2018년 하반기 예정)

〈표 3-32〉예산현액(1억이상)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현황

연번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 현액	불용액	예산편성
1	성동광진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자양초 본관 화장실 개선	361	361	제2회 추경
2	강동송파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주몽학교 장애인학생 이동보도육교설치	350	350	본예산
3	북 부	학교급식환경 개 선	동일초 급식실전면개보수	285	285	제1회 추경
4	강남서초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서운중 천장텍스 석면제거	259	259	사고이월
5	강동송파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잠동초 석면텍스 전면교체	198	198	제2회 추경
6	동작관악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상현초 방음벽설치	180	180	본예산
7	강남서초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서일초 석면텍스 전면교체	165	165	제2회 추경
8	성북강북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용문중 승강기 설치	250	250	사고이월
9	동작관악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성남중 유도부속숙소개선	150	150	본예산
10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사전조사비	150	150	이월 및 본예산
11	중 부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성동고 우레탄체육시설교체	129	129	제2회 추경
12	남 부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성베드로학교 장애인편의시설	116	116	제1회 추경

다.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⁵⁴⁾에 근거하여 회계 연도 중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 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7회계연도는 2차례 조직개편으로 총 17건, 236억 7,000 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표 3-33〉회계연도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발생건수	17	0	79	1	45
이 체 액	23,670	0	462,902	39,895	283,376

- O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를 검토하면
 - '17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7.5.18. 시행)에 따라 신청사 건립 등 교육 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공간기획단이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 팀단위로 신규 편제된 바 '본청운영' 사업예산 2,100만원이 학교 지원과로 이체되었음

^{54)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17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7.1. 시행) 등의 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직개편⁵⁵⁾이 진행되어, '교직원단체' 등의 사업 예산 236억 4.900만원이 이체되었음

〈표 3-34〉 2017회계연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이체	부서	刀人	이 레이	nj –
준 부서	받은부서	건수	이체액	비고
ठू <u>ी</u> ध	계	17	23,670	
소 계	(1차)	1	21	1차
총 무 과	학교지원과	1	21	(5.18.)
소 계	(2차)	16	23,649	
총 무 과		5	10,270	
예산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신 설)	3	6,874	2차 (7.1.)
행정관리담당관		1	596	(1.1.)
정보화담당관 (폐 지)	교육정보화과 (신 설)	7	5,910	

- O 예산의 이체는 직무권한의 변동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니며, 단순히 실·과 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예산의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56)

^{55) 2017.7.1.}자 조직개편 내용

⁻ 각종 단체의 노사관계 업무담당부서 일원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노사협력담당관 신설

⁻ 기획조정실장의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정보화담당관을 교육정보화과로 명칭 변경하여 교육행정국장 의 보조기관으로 조정

^{56)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6.7.) p.195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행정안전부, 2015.12.) p.30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7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 정보 화담당관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정보화과로 직무권한의 변동 없이 조직의 명칭 및 소속 실·국만 변동되었으나 이를 예산의 이체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시스템57) 상 단순 조직 명칭 변경이나 실·국 변동 시 이를 처리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이체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예산의 이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 예외 규정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예산의 이체와 이 관을 보다 명확히 구분·적용하였다면 불필요한 이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개편 후 빠른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 1차 조직개편(5월 18일)에 따른 예산이체의 경우, 결산서상이체 승인일이 6월 21일자로 한 달여가 지난 후 확정되었으며, 2차 조직개편(7월 1일)에 따른 예산 이체 또한 결산서상이체 승인일이 8월 2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조직 개편이라는 단일의 방침에 각기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향후 조직 개편 등 단일방안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의 이체는 동일시점에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⁵⁷⁾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예산요구·편성 및 예산배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출에서 결산까지 One-Stop처리와 자동분개를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과 맞춤형 재정분석이 가능한 통합시스템 (출처: 에듀파인 지원서비스http://www.edufine.go.kr)

라.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⁵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각 정책사업 간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임
-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용은 6건⁵⁹)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상반기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245억 1,400만원이 이용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⁶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표 3-35〉 예산의 이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발생건수	이 성	용 액	이 용 사 유	
외계한도	278亿十	감	증	ा ठ ा ग	
2017	6	△24,514	24,514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2016	5	△46,238	46,238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소송사무 수행 공탁금 및 추심금 부족분 충당	
2015	1	$\triangle 2,275$	2,275	누리과정 만3~5세 보육료 부족분 충당	

^{58)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⁵⁹⁾ 에듀파인시스템*상 순차적인 예산변경 번호 부여 건수 기준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예산 요구편성 및 예산배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출에서 결산까지 One-Stop처리와 자동분개를 통한 재무 보고서 작성과 맞춤형 재정분석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출처:에듀파인 지원서비스http://www.edufine.go.kr)

^{60)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시설비

- 교원 명예퇴직수당 상반기 부족액 확보61)를 위하여 인건비 담당 부서(예산담당관)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담당하는 부서(초등 교육과, 중등교육과)로 변경하기 위한 이용으로 확인되나.

〈표 3-36〉 교원 명예퇴직수당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채		_		2.2.2	०) -{	용 액	1 . 국근전/
정책 사업	세부사업	목	부서명	예산액	감	, 증	이용일자
		합	△24,514	24,514	2.21.		
	지방공무원 인 건 비	민간이전	예산담당관	76,713	△3,188		고리
인적	교원인건비	인건비	예산담당관	2,849,676	△5,008		공 립 초등교원
자원	교원인건비	인건비	초등교육과	24,154		8,196	
운용	교원인건비	인건비	예산담당관	575,648	△11,540		공 립 중등교원
	교원인건비	인건비	중등교육과	31,324		11,540	중등교원
인적	지방공무원 인 건 비	인건비	예산담당관	362,407	△1,972		
자원	교원인건비	민간이전	예산담당관	575,648	△1,525		
운용	교육전문직 인 건 비	인건비	예산담당관	41,112	△1,281		사 립 중등교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인건비재정 결 함 지 원	학교회계 전 출 금	중등교육과	15,413		4,778	

- 예산의 이용이 사전의결 원칙에 부합되는 적법한 절차라 할지라도 2회계연도 연속하여 동일한 사유로 대규모 예산의 이용이 발생된 바, 이는 예산 편성(추계)의 오류를 예산의 이용을 통하여 희석시키려는 수단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성격의 이용은 지양되어야할 것임

(단위 : 명, %, 백만원)

교원 명예퇴직 인원수						집	행	
수요조사	예산편성	신청	확	·정 비율	본예산액 (a)	이용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728	728	992	992	100.0	70,891	24,514	95,405	95,404

^{61) 2017}회계연도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 현황

마.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62)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2017회계연도의 경우, 총 69건, 482억 900만원이 전용된 바,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9조 9,215억 8,40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건수는 21건, 전용규모는 360억 4.8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37〉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회 계 연	토	2017	2016	2015
건	수	69	48	74
전 용 (예산현액대비	액 비율)	48,209 (0.5)	12,161 (0.1)	24,299 (0.3)
전년대비 증 감	건 수	21	△26	_
증 감	전용액	36,048	△12,138	_

^{62)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 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17회계연도의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⁶³⁾ 및 행정 안전부의「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⁶⁴⁾을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 3-38〉 예산 전용의 제한

- 전용제한: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중 누리과정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에서 419억 9,200만원이 전용되어 총 전용액(482억 900만원)의 87.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6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64)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6.7.) p.193

〈표 3-39〉 10억원 이상 전용 내역

WH NAI	П	ווא וכוני.	전용	누액	(단위 :	
세부사업	목	예산액	감	증	사 유	전 용 일자
	합 계		△41,992	41,992		
	자치단체 이 전	142,194	△25,007		유이학비 본예산확보액(4.8개월분)	4.17.
누리과정	학교회계 전 출 금	93,823		25,007	대비 부족액(4~6월분) 재원확보	4.17.
지 원	자치단체 이 전	355,485	△2,772		2017학년도 4분기(12월분) 유아학	12.14.
	학교회계 전 출 금	236,017		2,772	비 집행재원 확보	12.14.
	경상교육 지원사업	2,076	△1,300			
지 학	투자교육 지원사업	1,000	△300		공사립학교특별지원 예산잔액이 부 족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간 예산 변경	12.11.
	학교회계 전 출 금	5,046		1,600		
지 원	경상교육 지원사업	776	△249			
	투자교육 지원사업	700	△319		공사립학교특별지원 예산잔액이 부 족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간 예산 변경	12.28.
	학교회계 전 출 금	6,646		568		
	운 영 비	1,886	△1,475		기존 1차 추경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 및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운	
학생생활 지도지원	보 전 금	0		6	영비로 일괄 편성 이후 기본계획 TF운영 및 자문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 내용이 확정된 바, 건설비 및	12.7.
	건 설 비	0		1,469	보전금으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	
교 원	민간이전	595,145	△10,500		공립 교원 보수 부족분을 교원	12.11.
인 건 비	인 건 비	2,833,129		10,500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으로 충당	12.11.

- 개별 전용사례 중 유아교육과 소관의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유치원 유아학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2회에 걸쳐 277억 7,900만원이 전용되어 2017회계연도 총 전용액 (482억 900만원)의 57.6%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분기별로 소요액을 서울시로 전출하고 있으나 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유치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등을 위하여 매월 20일 유치원으로 교부하고 있어 2017년도 제1회 추경 확정65) 전 유치원 유아학비 부족분 등을 확보하고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0〉 누리과정지원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	. ર ોબે	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전용 일자
\\ _\ _\	~! H	٦	게닌ㄱ	감	증	/\ \ \ \ \ \ \ \ \ \ \ \ \ \ \ \ \ \ \	일자
		자치단체 이 전	142,194	△25,007		유아학비(유치원) 본예산 확 보액(4.8개월분) 대비 부족	4.17.
누 리 과 정		학교회계 전 출 금	93,823		25,007	액(4~6월) 재원 확보	4.17.
지	정 원	자치단체 이 전	355,485	△2,772		4분기(12월분) 유아학비 집	10.14
		학교회계 전 출 금	236,017		2,772	행재원 확보	12.14.

○ 예산담당관 소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회계연도 중 교육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것으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 산이 부족하여 2회에 걸친 전용을 통하여 과목별 예산을 조정한 것임

^{65) 2017}년도 제1회 추경 : 6. 1. 제1회 추경안 제출 / 6. 29. 제1회 추경 확정

○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지난 '16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으나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7년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15억원을 운영비로 편성66)한 이후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12월 7일 건설비 등으로 전용한 것임

〈표 3-41〉학생생활지도지원 전용 내역

세부사업		卫.	예산액	전원	쿵액	사 유	전용 일자
	~ 「日	٦	에겐틱	감	증	^r π	일자
학	생	운 영 비	1,886	△1,475		세시 허셔 중 기보ᅰ히 미	
생 기	활 도	보 전 금	0		6	예산 편성 후 기본계획 및 자문 결과에 따라 목간 예 산 변경	12.7.
지	원	건 설 비	0		1,469	선 변경	

- 동 전용 사례의 경우, 전용자체에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취지67)는 소규모안전체험관을 건립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로전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68)
-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편성오류를 희석시키는 제도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66) 2017}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설명자료 p.45

⁶⁷⁾ 학생안전체험시설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알림(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556, 2016.11.04.)

^{68)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p.281

- 아울러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공모서를 제출하여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우선 편성한 것은 소위 '특교를 담아둘 주머니가 없어 부득이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나 예산은 일단 담아둔 다음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여야 할 것임
- 교육혁신과 소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등 3건은 당초 민간이전 세출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3월 23일「서울특 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⁶⁹⁾제정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범위가 제도화된 바,
 -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이전 세출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단순 용역사업 성격의 예산 집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표 3-42〉 민간이전과목 전용 내역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	-액	예산구분	전 용 일자	부서	
/川丁/「百	7	에건적	감	증	에건기판	일자	171	
문화예술 교 육	민간이전	4,848	△318		1회 추경	9.20.	교육혁신과	
활성화	운 영 비	3,469		318	14 170	3.20.	프 ㅋ ㅋ 건 ㅡ	
문화예술	민간이전	142	$\triangle 142$					
교 육	운 영 비	10		140	1회 추경	9.28.	남부교육지원청	
활성화	유형자산	46		2				
특색교육	민간이전	1,144	△60		본예산	11.17.	교육혁신과	
과정운영	운 영 비	1,353		60	는 존에간	11.17.	교 육 역 신 과	

⁶⁹⁾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구체적 위탁 대상

사무를 명시 -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

- 그러나 회계연도 중 조례 제정에 따라 적정한 세출과목으로 정정 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이지만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의 경우 실제 전용이 이루어진 시기는 11월로 이전 2차례 추경70)을 통하여 세출과목 정정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 특히,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세출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전용한 것인 바, 이는 동 조례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오류를 예산의 전용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 등 4건의 전용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에듀파인시스템⁷¹)에 입력된 예산과목의 오기를 수정⁷²)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전용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될수 있으나, 단순 오류 입력으로 인한 전용은 예산 편성에 있어 정밀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례일 수밖에 없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가 있음

⁷⁰⁾ 제1회 추경 : 6.29. 의결 / 제2회 추경 : 9.6. 의결

⁷¹⁾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예산요구편성 및 예산배정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출에서 결산까지 One-Stop처리와 자동분개를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과 맞춤형 재정분석이 가능한 통합시스템

⁽출처 : 에듀파인 지원서비스http://www.edufine.go.kr)

⁷²⁾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예산서를 확정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여 예산서의 예산과목 오기 입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 또는 전용하여야 함

〈표 3-43〉 오류입력로 인한 전용 내역

222.242	-	n . 1 . n	<u> </u>	-액	^	저용	
세부사업	목	예산액	감	중	사 유	전용 일자	부서
학생생활 지도지원	운 영 비	529	$\triangle 442$		유치원안전체험교육 지원금	A 11	정책안전 기 획 관
	학교회계 전 출 금	23		442	전산 입력 오류	4.11.	기 획 관
특수 교육 운 영	학교회계 전 출 금	8,732	△40		서울시장애인채육대회 지원	E 17	학생생활
	민간이전	35		40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 로 오류 입력	5.17.	교육과
학교폭력	학교회계 전 출 금	4,803	△21		2016년 이후 개통된 초등 학교안심서비스 요금은 교	9.26.	학생생활
예방지원	운 영 비	340		21	육청에서 직접 납부하였으 나 전액 학교회계전출금으 로 오류 입력	9.20.	교육과
학생생활	학교회계 전 출 금	1,595	△14		중고 전체 지원하는 사업 임에도 학교회계전출금으	0.01	민주시민
지도지원	전출금등	0		14	로 편성하여 국립교 7교 교부를 위하여 목간 변경	3.21.	교육과

바.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⁷³⁾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353억 1,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1,074억 3,700만원)보다 119건, 278억 7,7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44〉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명 시 이 월						
회계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	액(B)	전년대비	증감액		
, ,, _	(A)	건수		비율 (B/A)		증감률		
2017	9,921,584	223	135,314	1.3	27,877	25.9		
2016	8,850,089	104	107,437	1.2	27,887	35.1		
2015	8,284,118	113	79,550	1.0		- -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1,353억 1,400만원)의 54.4%, 735억 3,900만원,
 ② 토지매입 지연 1.3%, 17억 9,300만원, ③ 사업추진 지연 42.6%, 576억 7,200만원, ④ 기타 1.7%, 23억 1,000만원 으로 검토됨

^{73)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45〉 발생사유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토지매입 지 연	사업추진 지 연	기타
건	수	223	173	1	40	9
이울	일 액	135,314	73,539	1,793	57,672	2,310
	비율	100.0	54.4	1.3	42.6	1.7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173건, 735억 3,900만원)은 학교 강당겸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공사, 냉난방개선 공사 등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101건, 415억 2,100만원)과 회계연도말인 10~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72건, 320억 1,800만원)등으로 확인됨74)

〈표 3-46〉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단위 : 건, 백만원)

재원구분	사 업 명	건수	명시이월액
	173	73,539	
자체재원	학교 강당겸 체육관 증축,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101	41,521
특별교부금	교육사업비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72	32,018

○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은 **가곡초 토지매입비**(17억 9,300 만원)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교육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학교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합의지연으로 연도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것임

⁷⁴⁾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941(2018.3.2.)

〈표 3-47〉 토지매인 지연으로 명시이웤된 내역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명시이월액	이 월 사 유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가곡초 토지매입비	1,793	학교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주 택도시공사와의 공급가격 미합의

- O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발생된 명시이월(40건, 576억 7,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을 검토하면.
 - 가칭)항동유치원 신설은 구로구 항동지구 입주시기 지연에 따른 유치원 개원 시기 조정(2018년 9월 → 2019년 3월)으로 건설비 전액이 명시이월 된 것임
 - 내진보강 관련 사업은 당초 2017년 7월경 성능평가 및 검증용역을 완료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대상 결정 후 내진보강을 할 예정이었으나, 용역수행 중 이재민 대피수용시설 내진보강 기준 강화75)에 따른 건축물 최소성능목표 상향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용역을 변경하여 재수행함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내 내진보강공사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된 것임
 - 풍성중 강당겸체육관 사업은 동 시설을 기존 급식실 위에 수직으로 증축하기 위해 제2회 추경(22억 5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사 시 학기 중 급식이 불가능하여 학교와 장기 급식 중단 협의 지속 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것임

⁷⁵⁾ 학교시설 내진성능목표 및 중요도계수 적용기준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5077, 2017.06.20.)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 연면적 1,500㎡ ~ 10,000㎡의 학교시설은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내진등급 (특)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등급 I을 적용

⁻ 건축구조기준 : 학교시설은 중요도 I로 분류되나, 학교시설이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에 속한다면 더 높은 중요도 (특)으로 분류

- 난곡초 강담겸체육관 사업은 제2회 추경(22억 4,500만원)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여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설계비 부족분제외 후 예산현액의 99.0%, 22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오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사업은 제2회 추경(19억 500만원) 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 결과 학생식당 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초공사 비용이 추가소요되나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것임
-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여도 타 사업으로 재원배분이 불가한 바, 명시이월 요청에 신중을 기하고, 승인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연도내 우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인 관리가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8〉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내역(10억원 이상)

	사	업	내	역		명시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가 유	칭 치			항 신	동 설	4,600	항동지구 입주시기 변경에 따른 개원 시기 조정 (2018년 9월→2019년 3월예정)	본예산
내	진	보	강	<u>⊐</u>	사	26,520	이재민 대피수용시설 내진보강 기준 강화 (내진등급 I → 내진등급 특)에 따른 건축 물 최소성능목표 상향으로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기간 연장 및 내진보강 대상증가 로 연내 보강공사 불가능	본예산
내	진	보	강	고 0	사	4,480	내진보강 기준 강화에 따른 내진보강 대 상증가로 '17년 보강공사 부족분 추경 확 보로 연내 집행 불가능	제2회 추경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역		명시이월액	이 월 사 유 비고
내	진	성	ار	평	가	4,619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기 투자계획에 따른 '18년 내진성능평가용역 조기집행 예정으로 '17년 2차 추경으로 '18년 대상사업 내진 성능평가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능
내	진성	성 능	평 >	가 검	증	1,540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기 투자계획에 따른 '18년 내진성능평가검증용역 조기집행 예정으로 '17년 2차 추경으로 '18년 대상사 제2회 추경업 내진성능평가검증 예산 확보로 연내 집행 불가능
<u>포</u>	성중 [*] 시	^{주1} 기		념체 ^요 비	육관)	2,205	기존 급식시설 위 수직증축공사로 동 공사시 급식이 불가하여, 학교와 장기급식 중단 협의 제2회 추경 등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능
1 –	고 당 7	•		_주 관 증	2 · 축	2,230	복합화시설 추진여부 결정이 지연(10월)됨 에 따라 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제2회 추경 집행 불가능
1	금 고 생				및	1,905	설계용역결과 학생식당 면적 증가로 공사 비용이 추가 소요되나, 관련예산 확보지연 제2회 추경 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주1. (강동송파) 풍성중 : 송파구 강동대로2길 27 주2. (동작관악) 난곡초 : 관악구 난곡로35길 102 주3. (강동송파) 오금고 : 송파구 송파로 중대로 247

사.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⁷⁶⁾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7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17회계연도에 발생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9조 9,215억 8,400만원)의 3.0%인 3,015억 7,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2.178억 1.000만원)보다 837억 6.2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49〉 사고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사 고 이 월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사고이월	[액(B)	전년대비	증감액		
	(A)	건수		비율 (B/A)		증감률		
2017	9,921,584	1,279	301,572	3.0	83,762	38.5		
2016	8,850,089	671	217,810	2.5	75,543	53.1		
2015	8,284,118	382	142,267	1.7	100,538	240.9		

- 2017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3,015억 7,200만원)이 직전회계 연도보다 837억 6,200만원 증가한 것은
 - 2017회계연도 시설사업비⁷⁷⁾ 사고이월액(전체 사고이월액의 98.4% 인 2,968억 7,2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 2017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2,133억 1,700만원)보다 835억 5,500만원 증가하였고,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규모(7,576억 5,400만원)가 직전회계연도 (6,567억 8,400만원)보다 1,008억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⁷⁸⁾되기 때문임

⁷⁷⁾ 시설사업비 :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의 7개 세부사업

〈표 3-50〉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17(A)	2016(B)	비교증감(A-B)
사 고 이 월 액	301,572	217,810	83,762
(건수)	(1,279)	(671)	(608)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296,872	213,317	83,555
(건수)	(1,222)	(614)	(608)
최종예산액 중 시설사업비	757,654	656,784	100,870

- 특히, 2017년도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된 시설사업비(2,035억 5,200만원)는 최근 5년간 추경으로 편성된 시설사업비중 최대 규모인 바, 2017회계연도에서 발생된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은 일정부분 예견된 결과로 사료됨

〈표 3-51〉최근 5년간 추경 및 시설사업비 규모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추경규모(증감액)	656,739	435,175	431,841	233,600	433,747
시설사업비규모(증감액)	203,552	117,470	104,749	△37,507	200,953

- 따라서, 하반기 추경은 예산의 이월이 수반되는 만큼 추경의 필요 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사업추진 가능성과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 시설사업비의 경우, 반복 이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고이월을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발생요인으로 이해하기보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월 요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⁷⁸⁾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14.)

(1) 사고이월 발생사유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계약기간 미도래가 전체 사고이월액(3,015억 7,200만원)의 39.5%, 1,190억 5,900만원,
 ② 추경예산편성사업이 19.1%, 575억 8,700만원, ③ 사전절차지연이 2.4%, 73억 1,600만원, ④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14.0%, 421억 4,000만원, ⑤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추진이 24.4%, 736억 4,000만원, ⑥ 기타 0.8%, 18억 3.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79)

〈표 3-52〉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건, 백만원, %)

_									
	구	분	총 계	① 계약기간 미 도 래	② 추경편성 사 업	③ 사전절차 지 연	④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⑤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⑥ 기타
	건	수	1,279	360	347	54	59	436	23
	이월] 액	301,572	119,059	57,587	7,316	42,140	73,640	1,830
	Ħ	비율	100.0	39.5	19.1	2.4	14.0	24.4	0.8

①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360건, 1,190억 5,900 만원) 중 이월액이 1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과 관련된 시설사업비로 2017년도에 체결한 계약기간(준공일)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⁷⁹⁾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941(2018.03.02.)

- 불암중 학생식당및급식실신축80) 사업은 설계용역 기간이 당초 60일에서 216일로 연장되어 2017년 10월 설계용역 검수를 완료하고,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계약체결(2018년 11월 준공예정)함에 따라 예산현액(17억 5,700만원)의 97.0%,17억 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공항고 이전·신설**81) 사업은 2017년 7월 설계완료82) 후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2018년 10월 준공예정)이 진행되어 예산현액(68억 2,000만원)의 95.3%, 65억 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녹원초 교사신축83) 사업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신축(2차) 계약을 하였으나, 터파기 중 암석발생, 민원에 따른 공휴일 작업 중지, 우천,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2018년 4월 까지 연장되어 예산현액(168억 1,300만원)의 58.6%, 98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⁸⁰⁾ 불암중 급식실 및 식당증축공사

① 위 치 : 노원구 하계동 288-3 불암중학교 내

② 증축규모 및 시설현황: 지상1~3층 (998.35㎡), 조리장, 학생 및 교직원식당

③ 설계용역기간 연장사유

⁻ 증축위치 배치 확정 및 컨설팅 협의 등 협의로 설계용역이 156일 중지되었다가 해제됨

⁻ 착수일로부터 60일 (착수일 : 2017년 3월 8일)

⁻ 준공일 : (변경 전) '17년 5월 6일(60일) → (변경 후) '17년 10월 9일(216일)

⁸¹⁾ 공항고등학교 이전·신설 사업 (2019년 3월 예정, 학급수 : 33학급)

①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733-3 (부지면적 : 13,390 m²)

② 총사업비 : 258억 7.400만원 (자체재원 : 199억 6.300만원, 특별교부금 59억 1.100만원)

⁸²⁾ 공항고 이전신설 설계비는 2016년도 본예산(6억원)에 반영되어 사전절차 등 거쳐 2016년 12월 설계착수함

^{- 2016}년 1월 ~ : 공항고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수 및 매각협의(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16}년 4월 ~ :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 마스터플래너 수행용역 착수, 공항고 이전신축사업 설명회 실시(2회) 등 사전 절차 수행

²⁰¹⁶년 9월 ~ : 설계공모 시행하여 2016년 12월 설계용역 착수(7개월)

⁸³⁾ 녹원초 교사신축 사업 (2018년 9월 개교예정, 학급수 : 28학급)

①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281-5 (연면적 : 11,778.23m²)

② 총사업비 : 196억 4,100만원

- 불암중, 공항고, 녹원초 등 학교시설사업의 경우, 용역이나 공사의 준공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면 후속 공정 지연 등으로 비효 율적인 예산집행결과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기한 연기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촌초⁸⁴)교실증축 사업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계약체결(2018년 2월 준공예정)하여 완료된 공정에 대한 대금 지급한 후 남은 잔액 10억 1,200만원(예산현액 20억 3,700만원의 49.7%)을 사고이월한 것임
 - 대도초⁸⁵⁾ 교실증축 사업은 2017년 4월 설계완료 후 2017년 5월 계약체결(2018년 2월 준공예정)하여 완료된 공정에 대한 대금 지급 후 남은 잔액 10억 6,900만원(예산현액 28억 8,400만원의 37.1%)이 사고이월된 것임
 - 언북중86) 강당겸체육관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2018년 9월 준공예정)함에 따라 예산현액(22억 4,500만원)의 98.6%, 22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임
- 시설사업비 중 대규모 신·증축사업 등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추진 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으로 사고이월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4) (}강남서초) 원촌초 : 서초구 사평대로 45길 26

^{85) (}강남서초) 대도초 : 강남구 선릉로 209

^{86) (}강남서초) 언북중 : 강남구 도산대로 38길 27

〈표 3-53〉계약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주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	월액 비율	사업기간 ^{주1)}	
	오류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607	0	1,607	100.0	2017.12.~2018.12.	
학교급식 환경개선	불암중 학생식당 및 급식실 신축	1,757	48	1,705	97.0	2017.3.~2018.11.	
	창북중 학생식당 신 증 축	1,467	40	1,419	97.0	2017.1.~2018.11.	
	공 항 고 이 전	4,456	85	4,371	98.1	2017.5.~2018.10.	
	공 항 고 신 설	2,364	190	2,132	90.2	2017.5.~2018.10.	
	녹원초 교사신축	16,813	6,951	9,859	58.6	2017.2.~2018.4.	
학교신증설	학교신증설설계비 (나래학교,가락일초중, 서 진 학 교 등)	1,933	148	1,183	61.2	2017.4.~2018.3.	
72-60 6	가 칭) 내 곡 중 마을형학교신축공사	2,000	816	1,184	59.2	2017.4.~2018.2.	
	원 촌 초 교 실 증 축	2,037	1,016	1,012	49.7	2017.5.~2018.2.	
	가 칭) 내 곡 중 학 교 신 설	13,488	5,734	6,695	49.6	2017.4.~2018.2.	
	대 도 초 교 실 증 축	2,884	1,734	1,069	37.1	2017.6.~2018.2.	
	노원초 체육관 증축	1,923	0	1,923	100.0	2017.12.~2018.12.	
	신 월 초 다목적강당 증축	2,385	0	2,385	100.0	2017.11.~2018.11.	
	상월초 체육관 증축	1,963	2	1,959	99.8	2017.11.~2018.10.	
학교시설	신 구 로 초 강당 겸 체육관증축	1,112	3	1,108	99.6	2017.12.~2018.12.	
증 개 축	홍은초 체육관증축	1,198	3	1,191	99.4	2017.11.~2018.9.	
	신화초 체육관증축	1,122	1	1,114	99.3	2017.12.~2018.11.	
	언 북 중 강 당 겸 체 육 관	2,245	31	2,213	98.6	2017.10.~2018.6.	
	온 곡 중 체 육 관 증 축	2,425	2	2,386	98.4	2017.11.~2018.12.	

주1. 2017년도 계약기간

②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347건, 575억 8,700만원)의 경우에도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의 학교시설사업에서 발생되는 경향이 있음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 홍은초87)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사업은 제2회 추경으로 건설비 (11억 7,200만원)확보되어 2017년 9월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달청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2018년 9월 준공예정)하여 예산현액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 성산중⁸⁸⁾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사업은 제2회 추경으로 건설비 (18억 5,500만원)확보되어 2017년 9월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달청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 (2018년 7월 준공예정)하여 예산현액의 97.1%, 18억 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묘곡초89) 교실증축 사업은 제1회 추경으로 건설비(15억 6,800만원 예산확보되어,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에 계약체결(2018년 10월 준공예정)하여 예산현액(15억 6,800만원)의 92.2%, 14억 4,500만원 사고이월된 것임

^{87) (}서부) 홍은초 : 서대문구 세검정로 105

^{88) (}서부) 성산중 : 마포구 성지1길 32-13

^{89) (}강동송파) 묘곡초 : 강동구 동남로 79길 46

위례별초90) 교실증축 사업은 제1회 추경으로 건설비(15억원)확보되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10월에 계약체결(2018년 7월 준공예정)하여 예산현액의 88.1%. 13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54〉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	월액 비율	사업기간 ^{주1)}
홍은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	증축 1,172	0	1,172	100.0	2017.11.~2018.9.
성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	증축 1,855	2	1,801	97.1	2017.11.~2018.7.
묘 곡 초 교 실 증	축 1,568	122	1,445	92.2	2017.12.~2018.10.
위 례 별 초 교 실 증	축 1,500	178	1,321	88.1	2017.10.~2018.7.

주1. 2017년도 계약기간

○ 학교시설비의 경우, 하반기 추경으로 소요예산이 편성되면 회계연도 잔여기간 중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월예산으로 직결되는 바, 추경 시에는 학교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소액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고려한 공정관리 등의 방안으로 사고이월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 기타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

○ 기타 사전절차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추진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572건, 1,249억 2.600만원) 중 이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을 검토한 바,

^{90) (}강동송파) 위례별초 : 송파구 위례광장로 243

- 가칭)거여고91)(토지매입비)는 군부대 이전과 부지조성 지연에 따라 매매계약이 불가하여 2017회계연도로 전액 명시이월(121억 2,800만원)된 사업으로, 2017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매매계약금의 5%인 6억 7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작금(115억 2.100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신목고 특별교실 증축 사업은 설계완료 후 2017년 4월부터 5월 까지 일상감사 및 관계기관 협의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부터 7월까지 입찰 및 계약체결(2018년 3월 준공)하여 15억 4,5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나, 우천으로 인한 공사중지 37일, 학교장 요청92)으로 인한 공사 중지 41일 등으로 준공예정 (2018년 3월 → 2018년 8월말)이 변경되었음
- 신내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신축하는 체육관 1층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기 완료된 체육관설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공사가 누락되어,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동 공사를 보완 설계를 하고,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일상 감사, 관계기관 협의, 입찰 등 실시 후 12월에 계약체결함에 따라예산현액의 92.4%, 12억 700만원 사고이월된 것임
- **잠실여고 특별교실 증축**사업(예산현액 15억 4,400만원)은 2017년 11월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지역현안)으로 교부되어 2017년 12월에 계약체결하여 예산현액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91) 2020}년 3월 개교 예정(송파구 거여동 소재)

⁹²⁾ ① 수험생의 수능시험(2017년 11월 16일) 준비로 인해 2017년 11월 10일 공사중지 요청 ②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연기(2017년 11월 23일)되어 공사중지 연장 요청

-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는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마다 이월사업비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바, 교부시기의 조정으로 연도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5〉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10억이상)

(단위: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사 집 내 픽		시물벽		비율	1111	
가 칭) 거 여 고 (토 지 매 입 비)	12,128	607	11,521	95.0	전년도명시이월	
천 이 초 건 설 비	16,391	18	16,355	99.8	전년도명시이월	
냉 난 방 기 화 학 체 척	1,812	0	1,812	100.0	제2회 추경	
신목고 특별교실 증축	2,119	573	1,545	72.9	본 예 산	
잠실여고 특별교실증축	1,544	0	1,544	100.0	간 주 처 리	
성재중 다목적강당증축	2,537	1,015	1,512	60.0	본 예 산	
신내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305	49	1,207	92.4	본 예 산	
영 파 여 고 급 식 실 썬 큰 시 설 및 리 모 델 링	1,199	0	1,193	99.5	제1회 추경	
천 왕 중 건 설 비	1,948	433	1,113	57.1	본 예 산	

아.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바. ○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5,054억
 4.200만원)보다 97억 4.600만원 증가한 5.151억 8.800만원임

〈표 3-56〉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7	2016	2015	
순세계잉여금		515,188	505,442	319,104	
전년	증감액	9,746	186,338	_	
대비	증감률	1.9	58.4	_	

○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은 예산현액 대비 법정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초과 수납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57〉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초과수납액 (C=B-A)	비고	
2017	9,921,584	9,951,120	29,536	법정이전수입 초과수납액 자체수입 초과수납액	10,685 18,835
2016	8,850,089	9,175,804	325,715	법정이전수입 초과수납액	316,159
2015	8,284,118	8,468,772	184,654	법정이전수입 초과수납액	180,361

어울시교육청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151억 8,800만원) 중 5,067억 7,200만원을 이미 2018년도 본예산(2017.12.15. 확정)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84억 1,600만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2018년 5월 31일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음

〈표 3-58〉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2017	2016	2015
순세계(잉여금(A)	515,188	505,442	319,104
다음연도	본예산(B)	506,772	311,864	187,428
예산반영	(B/A)	(98.4)	(61.7)	(58.7)
',	추경예산(C)	8,416	193,578	131,676
(반영률)	(C/A)	(1.6)	(38.3)	(41.3)

- 그러나, 결산 시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여 확정할 수 없었던 보조금 집행잔액(138억원)93)과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특별교부금 등 목 적지정지원금(19억원)이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반납금 및 사업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순세계잉 여금의 규모는 4.994억원 규모인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94)을 근거로 2017회계연도 결 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 중 98.4%, 5,067억 7,200만원을 이미 20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7조95)는 결산상 잉여금 중

^{9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금 집행현황(p.703)에서 산출된 보조금 집행잔액은 85억 2,100 만원(국고보조금 63억 4,000만원, 시도보조금 21억 8,100만원)이나, 각급학교로 교부한 학교회계전 출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 집행잔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결산상 보조금 집행잔액을 "0"으로 반영함

^{94)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교육부, 2017.09.) p.12 ⑥ 순세계잉여금

^{0 (}편성)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 반영

⁻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 지양

^{9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는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20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201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96)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 족을 해소하고자 다음해 5월 이후 진행될 결산결과를 예측하여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측분 중 대부분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 성하고 있으나「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용계획안 수립 기준」에 우선하여 편성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향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 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9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18, 2017.09.18.)

후에도 동일 사안이 제기될 수 있어 지침 중 세계잉여금의 본예 산 편성 조항을 보다 구체화시켜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 지방교육채 관련

○ 2017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1조 3,261억 1,000만원
 으로 전년도말 현재액(1조 5,656억 6,600만원)보다 △2,395억
 5,600만원(△15.3%) 감소된 바,

〈표 3-59〉 지방교육채 연도말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τ	당해연도증김	ł	당해연도말	11: 722/
사업명	현재액	발행(차입) (A)	상환 (B)	증감 (A-B)	현재액	이자납부액
합계	1,565,666	0	239,556	△239,556	1,326,110	34,023
2013 학교신설	87,388	0	87,388	△87,388	0	970
2014 학교신설	59,514	0	0	0	59,514	1,368
09년공자금안수 지방채 차환	182,629	0	76,420	△76,420	106,209	3,949
교원명예퇴직	256,175	0	0	0	256,175	6,374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0	0	0	268,763	6,093
교부금차액보전	137,722	0	75,748	△75,748	61,974	3,374
2015 학교신설	152,410	0	0	0	152,410	3,932
교육환경개선	217,414	0	0	0	217,414	2,729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0	0	0	152,638	3,923
2016 학교신설	51,013	0	0	0	51,013	1,311

- 2017회계연도 중에 상환(감소)한 지방교육채는 2013년도 학교 신설비 채무 잔액(873억 8,800만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09년 공자기금인수 지방채차환비(764억 2,000만원) 및 교부금차액보전비(757억 4,800만원) 일부를 조기 상환한 반면 2017회계연도 중 지방교육채 발행(증가)이 없었음
- 2017회계연도 중 신규 지방교육채 발행 없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으로 2017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 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2018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채 누적 규모는 다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표 3-60〉 지방교육채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 — /
회계	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지방:	채 잔액	1,459,450	1,326,110	1,565,666	1,188,295	373,226	311,222
전년	증감액	133,340 ^{주1}	△239,556	377,371	815,069	62,004	_
대비	증감률	10.1	△15.3	31.8	218.3	19.9	_

주1. 2018년도 증감액 1.333억 4.000만원 = 발행액 1.333억 4.000만원 - 상환액 0원 (2018년도 본예산 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 적으로 승인하여 발행한 것으로 향후 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가 상환⁹⁷⁾될 예정이지만, 상환 시까지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97) 2017년도말 지방교육채 잔액에 대한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_										
발행 연도	최초 상환	최종 상환	2017년말		,	상 환	계	힉		상환후 잔 액
연도	6 연 도	6 연도	잔액(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B)	(C=A-B)
	계		1,326,110	0	0	16,572	90,503	132,608	239,683	1,086,427
2014	2020	2029	165,723	0	0	16,572	16,572	16,572	49,716	116,007
2015	2021	2030	739,322	0	0	0	73,931	73,931	147,862	591,460
2016	2022	2031	421,065	0	0	0	0	42,105	42,105	378,960

차. 기타 검토의견

(1)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준수

- 평생교육과 소관 해산법인 귀속재산 장학금지원 사업은 「공익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98)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99) 등에 의해 해산 공익법 인100)에서 귀속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2017년도 본 예산에 출연금(3,400만원)과목으로 편성하여 서울상록과학학술 재단101)에 증여102)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상 증여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출연금 과목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9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9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¹⁰⁰⁾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 : 2001년 7월 교육에 관한 정책·학술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¹⁰¹⁾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98년 4월 26일자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학생, 교직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지원과 국내외 연수활동. 과학영재 교육진흥 등 서울 교육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10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상 증여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출연금 과목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103) 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 집행 관련

○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제출된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사업 명세서 중 ①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집행잔액 △35천원), ② **성서초 강당겸체육관**(집행잔액 △26,321천원), ③ **중등전문직연수**(집행잔액 △33,922천원)사업은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제출됨

〈표 3-61〉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

(단위 : 천원)

	과 목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 사업	사업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외국어]교육활	동지원	160,200	8,735	151,500	0	△35
	영어교 심화연	•	160,200	8,735	151,500	0	△35
		운영비	145,700	1,735	144,000	0	△35
학교시]설증개축	축 -	8,460,957	2,402,864	2,415,358	3,669,056	△26,321
	강담겸체육관 (성서초)		8,460,957	2,402,864	2,415,358	3,669,056	△26,321
		건설비	8,460,957	2,402,864	2,415,358	3,669,056	△26,321
현장중	심장학횥	· 날동지원	18,100	23,422	0	28,600	△33,922

^{10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위 : 천원)

	과 목				다음연도	. 이월액		
세부 사업	사업명	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중등전	문직연수	18,100	23,422	0	28,600	△33,922	
		운영비	18,100	23,422	0	28,600	△33,922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공문104)의 경우에도 2017회계 연도 사고이월사업 내역 중 **탑동유치원 전기시설개선 외 14건**은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표 3-62〉 사고이월사업 중 이월율 100% 초과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이월사업명	예산 현액 (A)	원인행 위월일	사고 이월액 (B)	이월률 (B/A)
1	남 부	탑 동 유 치 원 전 기 시 설 개 선	20	9.21.	23	115.0
2	중 부	용산초 본관동 냉난방(GHP)개선	100	12.11.	166	166.0
3	중 부	금호여중 진입로 및 계단개선공사	70	9.26.	71	101.4
4	강남서초	가 칭) 양 재 유 학 교 신 설	3,999	3.31.	4,187	104.7
5	강남서초	학 동 초 강 당 겸 체 육 관	2,205	11.12.	2,259	102.4
6	강남서초	서초고 냉난방개선전기공사	20	10.16.	23	115.0
7	강남서초	서 초 문 화 예 술 정 보 학 교 냉 난 방 개 선 전 기 공 사	10	10.22.	24	240.0
8	강남서초	경기고 냉난방개선공사	116	9.25.	125	107.8
9	강남서초	서울전자고 냉난방개선공사	489	9.25.	595	121.7
10	강남서초	대치초 냉난방개선공사	102	9.25.	126	123.5
11	강남서초	학동초 냉난방개선공사	114	9.25.	127	111.4

¹⁰⁴⁾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892(2018.05.04.)

(단위: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이월사업명	예산 현액 (A)	원인행 위월일	사고 이월액 (B)	이월률 (B/A)
12	강남서초	개포고 교사동외벽개선	792	2.15.	920	116.2
13	강남서초	서래초 장애인편의시설설치	30	10.12.	31	103.3
14	강남서초	언남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5	12.29.	17	113.3
15	강남서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교사동구조보강	100	12.18.	127	127.0

- 세출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 절차(이용, 전용, 변경 등)를 통해 예산 변경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간 실제 지출액에 대한 가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 「지방회계법」제29조 제2항105)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이미 "당겨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 바,
- 동 사례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표기되고 사고이월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일 수 밖에 없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05)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 "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가. 개 요

-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7조 제2항106)에 의해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말의 재정 상태와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결과를 확정하여 작성하는 결산서의 일부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7회계연도 말 자산은 14조 8,725억 4,000만원, 부채는 2조 1,655억 2,7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7,070억 1,300만원임
- O 2017회계연도의 수익은 9조 1,391억 4,500만원이며, 비용은 8조 8,232억 8,600만원인 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3,158억 5,900만원임

〈표 3-63〉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회계	7	재정상태표	£	재 정 운 영 표			
연도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17	14,872,540	2,165,527	12,707,013	9,139,145	8,823,286	315,859	
2016	14,893,433	2,502,278	12,391,155	8,652,926	8,426,776	226,150	
증 감	△20,893	△336,751	315,858	486,219	396,510	89,709	

^{106)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107)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 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108)으로 구성됨

(표 3-64) 재정상태표(요약)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 2017(A) 2016(B) 회계연도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자산 총계 14,872,540 100.0 14,893,433 100.0 $\triangle 20.893$ I. 유동자산 9.7 1,485,336 10.0 $\triangle 53.262$ 1,432,074 Ⅱ. 투자자산 287,422 1.9 275,036 1.9 12,386 Ⅲ. 유형자산 13,148,828 88.4 13,125,393 88.1 23,435 IV. 무형자산 0.0 1.009 0.0 $\triangle 735$ 1.744 V. 기타비유동자산 3.207 () ()5.924 () () $\triangle 2.717$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4,872,540 100.0 14,893,433 100.0 $\triangle 20.893$ 부채 총계 2.165.527 14.6 2.502.278 16.8 $\triangle 336.751$ I. 유동부채 120.170 0.8 208.833 1.4 $\triangle 88,663$ Ⅱ. 장기차입부채 2,042,476 13.8 2,291,347 15.4 $\triangle 248,871$ Ⅲ. 기타비유동부채 0.0 0.0 783 2.881 2.098 순자산 83.2 12.707.013 85.4 12.391.155 315.858 I. 고정순자산 11,630,401 78.2 11,475,642 77.1 154.759 Ⅱ. 특정순자산 0.0 17,890 0.1 5,928 11,962 Ⅲ. 일반순자산 7.1 6.1 1.058.722 909.585 149.137

^{107)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1·2·4호 생략)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재정운영표 가. 재정상태표 다. 순자산 변동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자산·부채·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108) 자산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부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산되는 현재의 의무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

- 2017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4조 8,725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말 자산(14조 8,934억 3,300만원) 보다 △208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① "유형자산109)" 중 학교신설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1,667억원 7,500만원 증가와 ② "투자자산110)" 중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에 의한 특정기금 119억 6.100만원 증가 등임
- 주요 감소내역은 ① "유형자산" 중 건물·집기비품 등 6개 항목의 감 가상각¹¹¹⁾누계액 2,034억 7,600만원 증가, ② "유동자산¹¹²⁾"
 중 서울시로부터의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¹¹³⁾ △1,890억 7,700만원 감소 등임
- 도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88.4%(13조
 1.488억 2.800만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2017년도 증감 구 분 미수채권 미수채권 채권액 수납액 채권액 수납액 (A-B)(A) (B) 합 계 3.795.159 3.393.905 401,253 3,386,135 2,795,805 590.330 $\triangle 189.077$ 지 방교육세전입금 | 1,849,937 | 1,660,840 | 189,097 | 1,617,687 | 1,318,179 | 299.508 $\triangle 110,412$ 담배소비세전입금 358.313 358.097 216 323.583 249.092 $\triangle 74.275$ 74.491 시 · 도 세 전 입 금 1,538,728 1,326,787 211,941 | 1,422,260 | 1,205,929 | 216,331 $\triangle 4.39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8,181 48,181 22,605 22,605 0 0

¹⁰⁹⁾ 유형자산: 교육·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함

¹¹⁰⁾ 투자자산 :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장기 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함

¹¹¹⁾ 감가상각: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 기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하여 적용함(유형자산 중 토지, 도서, 입목 등 제외)

¹¹²⁾ 유동자산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미수채권·미수금·단기대여금·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함

¹¹³⁾ 미수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연도별 내역

유동자산이 9.7%(1조 4,320억 7,400만원), 장기학자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의 투자자산이 1.9%(2,874억 2,200만원)를 차지함

 ○ 2017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2조 1,655억 2,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부채(2조 5,022억 7,800만원) 보다 △3,367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음

(표 3-65) 부채별 세부내역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A)	20160		スマト(A D)
- 구 분 -		구성비		구성비	증감(A−B)
부 채 총 계	2,165,527	100.0	2,502,278	100.0	△336,751
I .유동부채	120,170	5.6	208,833	8.3	△88,663
1. 일반미지급금	0	0.0	54,983	2.2	△54,983
2. 보조금반환미지급금	0	0.0	0	0.0	0
3. 미지급이자비용	5,182	0.2	4,568	0.2	614
4. 수업료선수금	19,751	0.9	20,715	0.8	△964
5. 임대료선수금	268	0.0	288	0.0	△20
6. 사용료선수금	775	0.0	653	0.0	122
7. 자산매각선수금	7,857	0.4	1,517	0.1	6,340
8.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0	0.0	43,694	1.7	△43,694
9. 유동성민자리스부채	52,948	2.5	50,894	2.0	2,054
10. 세외예수금	33,389	1.5	31,521	1.3	1,868
Ⅱ.장기차입부채	2,042,476	94.3	2,291,347	91.6	△248,871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839,933	38.8	1,035,795	41.4	△195,862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486,177	22.5	486,177	19.4	0
3. 민자리스부채	716,366	33.1	769,375	30.7	△53,009
Ⅲ.기타비유동부채	2,881	0.1	2,098	0.1	783
1. 퇴직급여충당부채	2,721	0.1	1,967	0.1	754
2. 장기세외예수금	160	0.0	131	0.0	29

- 주요 증가내역은 ① "유동부채"¹¹⁴) 중 자산매각선수금¹¹⁵), 유동성 민자리스부채¹¹⁶) 및 세외예수금¹¹⁷) 102억 6,200만원 증가,
 ② "기타비유동부채"¹¹⁸) 중 퇴직급여충당부채¹¹⁹) 7억 5,400만원 증가 등임
- 주요 감소내역은 ① "유동부채" 중 일반미지급금120) 및 유동성장 기금융기관차입금121) △986억 7,700만원 감소, ② "장기차입 부채" 중 장기금융기관차입금122) 및 민자리스부채123) △2,488억 7,100만원 감소 등임
- 부채는 학교신설, 교부금차액보전 등의 지방채 및 BTL 사업 상환 액으로 구성된 장기차입부채가 94.3%(2조 424억 7,600만원), 유동부채가 5.6%(1,201억 7,0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0.1%(28억 8.100만원)을 차지함

¹¹⁴⁾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 등록금선수금, 유동성민자리스부채 (BTL).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

¹¹⁵⁾ 자산매각선수금 :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선수취한 금액

¹¹⁶⁾ 유동성민자리스부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한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의 현재가치로 지급기한 1년 이내의 임차료 (서울시교육청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운영)

¹¹⁷⁾ 세외예수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유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중 지급예정일이 1년 이내인 채무 (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일시적 보관)

¹¹⁸⁾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함

¹¹⁹⁾ 퇴직급여충당부채: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2017.12.3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계상

¹²⁰⁾ 가재울초 외 3교(구심초·도선고·금호고) 토지 매입 미지급금 지급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549억 8,300만원 감소

^{121) 2013}년도 발행된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으로 △436억 9,400만원이 감소

^{122) 2014}년도 이후 발행된 지방교육채 중 일부 원금 조기 상환으로 △1.958억 6.200만원이 감소

¹²³⁾ 민자리스부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한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의 현재가치로 지급기한 1년을 초과하는 임차료

○ 2017회계연도 교육청 부채비율¹²⁴⁾은 17.0%로 직전회계연도
 (20.2%) 보다 △3.2%p 감소한 바.

〈표 3-66〉 부채비율 및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순자산	부채	부채비	율(B/A)	기바고 이제
회계연도	(A)	(B)		전년대비 증감	지방교육채 발행액
2017	12,707,013	2,165,527	17.0	△3.2	0
2016	12,391,155	2,502,278	20.2	2.5	421,065
2015	12,165,005	2,162,350	17.7	7.0	815,070
2014	12,273,045	1,321,559	10.7	0.1	242,143
2013	12,306,342	1,305,548	10.6	0.3	131,082

- 2017회계연도 중 신규 지방교육채 발행 없이 이전 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상환¹²⁵)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2017회계연도 교육청 유동비율¹²⁶⁾은 1,191.7%로 직전 회계연도(711.3%) 보다 1.7배정도 높아진 바, 유동부채의 감소율 (△42.5%)이 유동자산의 감소율(△3.6%) 보다 12배 정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단위 : 백만원)

2016년말잔액(A)		2017년 중 증감내역		2017년말잔액	
2010년 글센 막(A)	계(B=가-나)	발행액(가)	상환액(나)	(C=A+B)	
1,565,666	△239,556	0	239,556	1,326,110	

¹²⁶⁾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되며, 유동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의미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임

¹²⁴⁾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 운영이 경직되고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서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측정됨

^{125) 2017}회계연도 지방교육채 상환액: 2,395억 5,600만원

〈표 3-67〉 유동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A)	2016(B)	증감(C=	A-B)
十 亚	2017(A)	2010(D)		증감률(C/B)
유동자산(A)	1,432,074	1,485,336	△53,262	△3.6
유동부채(B)	120,170	208,833	△88,663	$\triangle 42.5$
유동비율(A/B)	1,191.7	711.3	_	_

○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2017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2조 7,070억 1,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조 3,911억 5,500만원) 보다 3,158억 5,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자산이 직전회계연도 보다 △208억 9,300만원 감소한 반면, 부채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3,367억 5,100만원 감소하였기때문임

다.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지방회계법」제15조127)에 근거하여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128)으로 구성되며,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임

^{127)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1·2·4호 생략)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128)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수익·비용의 정의 및 분류

수익: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하며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분류

비용 :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며 비용은 주요 기능별로 구분

〈표 3-68〉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백만원, %)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 교	2017(A)	2016(271/A D)	
과 목		구성비		구성비	증감(A-B)
수익 총계(A)	9,139,145	100.0	8,652,926	100.0	486,219
I. 이전수익	8,885,698	97.2	8,411,035	97.2	474,663
Ⅱ. 자체수익	148,567	1.6	157,843	1.8	△9,276
Ⅲ. 기타수익	104,880	1.2	84,048	1.0	20,832
비용 총계(B)	8,823,286	100.0	8,426,776	100.0	396,510
I. 인적자원운용	4,281,739	48.5	4,188,549	49.7	93,190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469,285	5.3	361,923	4.3	107,362
Ⅲ. 교육복지지원	1,298,467	14.7	960,739	11.4	337,728
IV. 보건/급식/체육활동	45,250	0.5	314,488	3.7	△269,238
V. 학교재정지원관리	1,795,759	20.4	1,725,749	20.5	70,010
VI. 학교교육여건개선	133,872	1.5	89,634	1.1	44,238
VII. 평생교육	19,239	0.2	16,140	0.2	3,099
VII. 직업교육	576	0.0	1,500	0.0	△924
IX. 교육행정일반	78,245	0.9	60,555	0.7	17,690
X. 기관운영관리	39,705	0.5	37,295	0.5	2,410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7,424	1.0	84,697	1.0	2,727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573,725	6.5	585,507	6.9	△11,782
운영차액(A-B)	315,859		226,150		89,709

○ 2017회계연도의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8조 6,529억 2,600만원) 보다 4,862억 1,900만원 증가한 9조 1,391억 4,500만원으로 이전수익은 총수익의 97.2%, 8조 8,856억 9,800만원이고 자체 수익은 1.6%, 1,485억 6,700만원, 기타수익이 1.2%, 1,048억 8,000만원임

〈표 3-69〉 재정운영표 수익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2017(.	A)	2016(スプ(/ D)	
	- 当		구성비		구성비	증감(A-B)
	수익 총계	9,139,145	100.0	8,652,926	100.0	486,219
I	. 이전수익	8,885,698	97.2	8,411,035	97.2	474,663
	중앙정부 이전수익	5,259,509	57.5	5,064,657	58.5	194,85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3,463,832	37.9	3,195,451	36.9	268,381
	기타이전수익	162,357	1.8	150,927	1.7	11,430
П	. 자체수익	148,567	1.6	157,843	1.8	△9,276
	등록금수익	140,783	1.5	148,979	1.7	△8,196
	수익자부담수익	1,945	0.0	2,106	0.0	△161
	임대료수익	471	0.0	536	0.0	△65
	사용료수익	4,736	0.1	4,962	0.1	△226
	수수료수익	630	0.0	1,261	0.0	△631
Ш	[. 기타수익	104,880	1.2	84,048	1.0	20,832
	이자수익	11,014	0.1	10,229	0.1	785
	자산처분이익	7,560	0.1	6,451	0.1	1,109
	제재금수익	2,183	0.0	1,767	0.0	416
	잡수익	31,260	0.3	22,844	0.3	8,416
	기타의기타수익	52,862	0.6	42,757	0.5	10,105

- 주요 증가내역은 이전수익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익" 1,948억원 증가, 서울시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등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2,683억원 증가, 기타 수익 중 "잡수입" 및 "전기오류수정이익129)" 216억원 증가 등임

¹²⁹⁾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하나 당기에 수정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이익

- 주요 감소내역은 자체수익 중 등록금수익이 학생수 감소로 △81억
 9,600만원 감소, 수수료수익이 인정도서 심의 수수료 감소로 △6억
 3,100만원 감소 등임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재무구조의 지주성¹³⁰)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수익 대비 자체수익의 비율(구성비)인 재정자립도를 측정해보면, 2017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1.6%로 직전회계연도(1.8%)보다 0.2%p 낮아진 바,
 - 직전회계연도 보다 자체수익은 감소(△92억 7,600만원)한 반면 이전수익은 증가(4,746억 6,300만원)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만큼 이전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2017회계연도의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8조 4,267억 7,600만원) 보다 3,965억 1,000만원이 증가한 8조 8,232억 8,600만원으로 인적자원운용 48.5%(4조 2,817억 3,900만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0.4%(1조 7,957억 5,900만원), 교육복지지원 14.7%(1조 2,984억 6,700만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¹³¹⁾ 6.5%(5,737억 2,500만원) 등임
 - 주요 증가내역은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의 증가 920억 500만원, 공·사립학교운영비 증가 700억 1,000만원, ICT활용교육·특성화고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1,073억 6,200만원 등이며,

¹³⁰⁾ 자주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의 지표가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총수익 대비 자체수익의 비율로 측정함

¹³¹⁾ 기타비현금지출비용: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해 발생한 비용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등)

- 주요 감소내역은 누리과정지원 △147억 9,800만원, 기타비현금
 지출비용 △117억 8,200만원, 학비지원 △97억 8,800만원,
 외국어교육 △33억 3,900만원 감소 등임
- 2017회계연도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3,158억 5,900만원 으로 직전회계연도(2,261억 5,000만원) 보다 897억 900만원 증가 한 바, 수익증가액(4,862억 1,900만원)이 비용증가액(3,965억 1,000만원)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지방회계법」제17조 제2항¹³²⁾에 의한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통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¹³³⁾과 재정효율성¹³⁴⁾을 검토하면,

(단위: 백만원, %)

〈표 3-70〉성질별 재정운영표

2017년 12월 31일 현재

V. 기타비용

운영차액(A-B)

2017(A) 2016(B) 과 목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A) 9.139.145 8,652,926 486,219 100.0 100.0 I. 이전수익 97.2 97.2 8.885.698 8,411,035 474.663 Ⅱ. 자체수익 $\triangle 9,276$ 148,567 1.6 157,843 1.8 Ⅲ. 기타수익 104,880 1.2 84,048 1.0 20,832 비용 총계(B) 100.0 100.0 8.823.286 8.426.776 396.510 I. 인거비 3.548.973 40.2 3.487.395 41.4 61.578 Ⅱ. 복리후생비 8.3 705,423 8.4 27,997 733,420 Ⅲ. 운영관리비 825,447 9.4 865,564 10.3 $\triangle 40,117$ IV. 이전비용 3,571,311 40.5 3,285,260 39.0 286,051

1.6

83.134

226,150

1.0

61,001

89,709

144,135

315,859

^{132)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lt;u>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u> 2. 유형자산 명세서 3. 감가상각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33)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재무분석지표

¹³⁴⁾ 재정효율성 :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 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O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수지 비율135)로 측정하는 바.

〈표 3-71〉 총수지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7 19	0.017	0010	전년도 대	대비 증감
구 분	2017	2016	금액	비율
총비용(A)	8,823,286	8,426,776	396,510	4.7
총수익(B)	9,139,145	8,652,926	486,219	5.6
총수지비율(A/B)	96.5	97.4	_	_

- 2017회계연도 총수지비율은 직전회계연도 97.4% 보다 △0.9%p 낮아진 96.5%로 재정운영상의 안정성은 직전회계연도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됨
- O 효율성은 경상경비¹³⁶⁾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경상경비 비율로 측정되는 바.

〈표 3-72〉 경상경비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전년도 대	비 증감
了 让	분 2017 2016		금액	비율
경 상 경 비 (A)	8,679,151	8,343,642	335,509	4.0
총 비 용(B)	8,823,286	8,426,776	396,510	4.7
경 상 경 비 비율(A/B)	98.4	99.0	_	_

¹³⁵⁾ 총수지비율: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지표임

¹³⁶⁾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 2017회계연도 경상경비 비율은 98.4%로 직전회계연도(99.0%) 보다 △0.6%p 감소하였으나, 경상경비는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비용으로 경상경비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2017회계연도 재정 효율성은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라.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운영차액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¹³⁷ 의 증감 내역을 나타냄

〈표 3-73〉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A)	2016(- 국근년, 707 중감(A-B)	
	। च		구성비		구성비	8 4 (A D)
	기말순자산	12,707,013	100.0	12,391,155	100.0	315,858
	고정순자산					
	Ⅰ.전기이월고정순자산	11,475,642		11,650,099		△174,457
	Ⅱ.고정순자산의증가	532,945		385,714		147,231
	Ⅲ.고정순자산의감소	378,186		560,171		△181,985
	IV.차기이월고정순자산	11,630,401	91.5	11,475,642	92.6	154,759
	특정순자산					
	Ⅰ.전기이월특정순자산	5,928		0		5,928
	Ⅱ.특정순자산의증가	12,004		5,928		6,076
	Ⅲ.특정순자산의감소	43		0		43
	Ⅳ.차기이월특정순자산	17,889	0.2	5,928	0.1	11,961
,	일반순자산					
	Ⅰ.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909,585		514,905		394,680
	Ⅱ.운영차액	315,859		226,150		89,709
	Ⅲ.일반순자산의증가	378,229		560,171		△181,942
	IV.일반순자산의감소	544,950		391,642		153,308
	V.차기이월일반순자산	1,058,723	8.3	909,585	7.3	149,138

^{137)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의 정의 고정순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지방교육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

특정순자산 : 재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 관리해야 함(투자자산 내의 특정기금으로 예차관리)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 **기말순자산**¹³⁸⁾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자산에 당해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여 산출하는 바.
- 2017회계연도의 순자산은 12조 7,070억 1,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조 3,911억 5,500만원) 보다 3,158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이 총순자산의 91.5%(11조 6,304억 100만원),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총순자산의 0.2% (178억 9,900만원),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의 8.3% (1조 587억 2.300만원)로 구성됨
 - 고정순자산의 경우, 학교신설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증가, 집기비품의 증가 등으로 5,329억 4,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당기상각액(감가상각비¹³⁹)) 2,969억 4,600만원 적용¹⁴⁰) 등으로 △3,781억 8,6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증감액 1,547억 5,9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은 11조 6,304억 100만원으로 나타남
 - **특정순자산**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의 기금 적립액 증가로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178억 8.900만원임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의 증감에 따라 △1,667억 2,100만원 감소하였고, 운영차액 3,158억 5,900만원이 반영 되어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은 1조 587억 2,300만원임

¹³⁸⁾ 기말순자산 = 차기이월고정순자산 + 차기이월특정순자산 + 차기이월일반순자산

¹³⁹⁾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내용연수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계 상의 절차로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하여 적용함 (유형자산 중 토지, 도서, 입목,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박물관유물 제외)

^{140)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p.423(감가상각 명세서)

5. 성과보고서

가. 개 요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141)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결산서의 구성서류142)임

나.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2개, 단위과제 94개, 성과지표 7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71개 중 63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88.7%임
- O 달성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 개수는 10개(14.1%)이고,

^{141)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42)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는 53개(74.6%)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 성과지표 개수는 8개(11.3%)임

〈표 3-74〉부서별 성과현황

(단위 : 개, %)

비기대	성과목표의	성과달성등급			
부서명	성과지표수	초과 달성 ^{주1}	달성 ^{주2}	미달성 ^{주3}	
합계	71	10	53	8	
	(100.0)	(14.1)	(74.6)	(11.3)	
대변인	1	0	1	0	
감사관	2	0	2	0	
총무과	4	0	3	1	
정책안전기획관	1	0	1	0	
예산담당관	1	0	1	0	
행정관리담당관	1	0	0	1	
참여협력담당관	8	1	4	3	
노사협력담당관	3	0	3	0	
교육혁신과	3	1	2	0	
유아교육과	3	0	3	0	
초등교육과	4	1	3	0	
중등교육과	6	1	5	0	
민주시민교육과	4	2	2	0	
평생교육과	2	0	2	0	
학생생활교육과	3	2	1	0	
진로직업교육과	4	0	4	0	
체육건강과	5	0	5	0	
학교지원과	4	1	3	0	
교육재정과	1	0	0	1	
교육시설안전과	2	0	1	1	
교육정보화과	2	1	1	0	
교육연구정보원	2	0	2	0	
과학전시관	1	0	1	0	
교육연수원	2	0	2	0	
학생교육원	2	0	1	1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주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¹⁴³⁾에서 기술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한 지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원인 분석하여 제출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 성과보고서 작성지침144)에 따르면 향후 개선사항 작성 시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차 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제출된 바,
 -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 3개의 성과지표는 2회계연도 연속 하여 초과달성하였고, 교육재정과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미달성된 바,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과 향상은 물론 성과지표의 적 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 3-75〉 2회계연도 연속 미(초과)성과달성 현황

(단위:%)

소관부서	성과지표	성과달성등급(달성률)		
エもナペ	. 847年	2017	2016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초과달성	초과달성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277.14)	(270.83)	
하고기이기	후기고 진학설명회 참석율	초과달성	초과달성	
학교지원과	추기고 신약설정의 심역될	(230)	(279.67)	
학생생활교육과	하어보기 포근그래 차서 비우	초과달성	초과달성	
4/8/8 = 亚 年年	학업복귀 프로그램 참여 비율	(136.93)	(168.31)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상담센터운영률	초과달성	미달성	
47878 宣 亚年年	역 7878 급센니군 정필	(201.43)	(90.43)	
교육재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미달성	미달성	
<u> </u>	8 6 78 91 12 78 12 17 91 12	(80)	(92)	

^{14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p.101

^{144)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2017.12. 교육부) p.61

Ⅳ. 질의토론 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없음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487**

제출연월일: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9조 9,511억 2천만원
- 세출 결산액 8조 9,990억 4천 5백만원
- 차 인 잔 액 9,520억 7천 5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353억 1천 5백만원과 사고이월액 3,015억 7천 2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51억 8천 8백만원임.

나. 채권현재액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042억 4백만원으로 2016 회계연도 말 3,037억 6천 9백만원에 비하여 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채무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3,261억 1천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조 5,656억 6천 5백만원에 비하여 2,395억 5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라.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집행현황은

- 사 용 결 정 액	36억 4천 2백만원
- 지 출 액	33억 3천 9백만원
- 이 월 액	1억 5천만원
- 사용결정액 중 집행잔액	1억 5천 3백만원임.

마. 재무회계 결산

- (1)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4조 8,725억 4천 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4조 8,934억 3천 3백만원에 비하여 208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2) 2017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2조 1,655억 2천 7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2조 5,022억 7천 8백만원에 비하여 3,367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12조 7,070억 1천 3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말 12조 3,911억 5천 5백만원에 비하여 3,158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바. 성과보고서 결산

2017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2개, 단위과제 94개, 성과지표 7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71개 중 63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88.7%의 달성율을 거두었음.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지방재정법 제50조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
-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지방회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 2.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금

ㅇ결산 총괄

(단위:천원)

예산		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비			보조금	순세계	집행잔액	
해진 현액 (A)	차인 잔액 (B)=C-D	세입 결산 (C)	세출 결산 (D)	채무 상환		소계 (E)	명시	사고	집행 잔액 (F)	원세계 잉여금 (G)=B-E-F	(H) =A-D-E
9,921,584,430	952,075,079	9,951,119,797	8,999,044,718	0	436,887,138	135,314,923	301,572,215	0	515,187,941	485,652,574	

ㅇ채권 및 채무

(단위:천원)

그ㅂ	2016년 드만		2017년도말			
। च	구분 2016년도말		증가	감소	2017년도달	
채권	303,769,780	434,168	3,620,037	3,185,869	304,203,948	
채무	1,565,665,649	△ 239,555,528	0	239,555,528	1,326,110,121	